

석사학위논문

서울시 모자보호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심 유 미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이정호

서울시 모자보호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Measures for the Maternal and Child
Welfare Facilities Operated by Seoul City Government

2002년 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심 유 미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정호

서울시 모자보호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Measures for the Maternal and Child
Welfare Facilities Operated by Seoul City Government

위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심 유 미

심유미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정함

2002년 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1. 연구내용	3
2. 연구방법	4
제3절 연구의 제한점	4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모자가정의 정의	5
1. 모자가정의 정의	5
2. 모자가정의 특성	6
제2절 모자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10
1. 외국의 모자복지제도	10
2. 우리 나라의 모자복지제도	13
제3절 모자가정의 시설보호	15
1. 모자가정의 시설보호의 필요성	15
2. 모자보호시설의 기능	17
제3장 모자보호시설 현황	19
제1절 모자보호시설 현황	19
제2절 모자보호시설의 운영체계	21
1. 입소대상	21
2. 급여내용	23
3. 전달체계	25
4. 재정	28

제4장 모자보호시설의 서비스 조사결과 분석	30
제1절 조사연구 방법	30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30
2. 조사도구 및 내용	30
3. 자료처리	32
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	32
1. 일반적 특성	32
2. 시설입소과정	36
3. 경제적 실태	40
4. 주거실태	46
5. 자녀양육 및 교육 실태	49
6. 의료서비스 실태	53
7. 정서적 실태	56
8.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인식 차원별 상관관계	60
9. 시설운영에 대한 조사 결과	62
10. 모자보호시설 서비스에 대한 욕구	66
제5장 모자보호시설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8
제1절 문제점	68
1. 생업활동 지원의 부족	68
2. 모자보호시설 및 주거지원 부족	69
3. 자녀양육 및 교육의 미흡	70
4. 보건·의료서비스의 부족	70
5. 모자보호시설 전문인력의 부족	71
6. 시설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및 소극적 운영	72
7. 모자복지정책의 미흡	73
제2절 개선방안	74
1. 생업활동 지원강화	74

2. 모자보호시설의 확충 및 주거지원 강화	74
3. 야간 보육 및 교육지원 강화 및 확대	75
4. 보건·의료서비스의 강화	76
5. 상담 및 전달체계 상의 전문인력 확충	76
6. 시설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적극적 운영	77
7. 종합적인 모자복지정책 실시	79
제6장 결론	80
참고문헌	83
ABSTRACT	86
부록	89

- 표 목 차 -

<표 3-1> 모자복지시설의 종류 및 보호내용	20
<표 3-2> 2001년도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	21
<표 3-3> 2001년도 서울시 저소득 모자가정 현황	22
<표 3-4> 모자보호시설 입소대상 기준의 변화	22
<표 3-5> 2001년도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내용	23
<표 3-6> 2001년도 서울시 모자보호시설 지원항목 및 단가	24
<표 3-7> 서울시 모자보호시설 프로그램 실시현황(2001년도)	25
<표 3-8>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27
<표 3-9> 모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	27
<표 3-10> 모자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28
<표 4-1> 조사대상	30
<표 4-2> 조사내용	31
<표 4-3> 연령	33
<표 4-4> 교육수준	34
<표 4-5> 결혼상태	34
<표 4-6> 자녀의 수	35
<표 4-7> 입소자 자녀의 연령 및 학력	35
<표 4-8> 모자원에 대한 정보 최초 입수경로	36
<표 4-9> 모자원 입소를 위한 최초 상담자	37
<표 4-10> 입소사유	37
<표 4-11> 시설에 기대하는 도움과 받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	38
<표 4-12> 희망 입소기간	39
<표 4-13> 시설입소 과정에 대한 인식	39
<표 4-14> 소득상황	40
<표 4-15> 입소 후의 소득변화	41
<표 4-16> 재산상황	42
<표 4-17> 입소 후의 재산변화	42

<표 4-18> 입소자의 월평균 소득, 지출, 저축현황	43
<표 4-19> 시설입소 전후의 근로형태	44
<표 4-20> 시설입소 후의 경제적 변화에 대한 인식	45
<표 4-21> 경제적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46
<표 4-22> 주거상태	47
<표 4-23> 시설입소후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48
<표 4-24>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	49
<표 4-25> 자녀양육 및 교육의 애로점과 가장 필요한 도움	50
<표 4-26> 시설입소 후 자녀양육 및 교육의 변화	51
<표 4-27> 자녀양육 및 교육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52
<표 4-28> 이용 의료기관 현황	53
<표 4-29> 입소자의 질병현황	54
<표 4-30> 시설입소 후의 의료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인식	55
<표 4-31>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차이	56
<표 4-32> 시설입소 전 심리·정서적 서비스 이용 현황	57
<표 4-33> 시설입소 후의 심리·정서적 변화에 대한 인식	58
<표 4-34> 심리·정서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 차이	59
<표 4-35> 입소자가 만족하거나 희망하는 서비스	60
<표 4-36>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항목별 상관관계	61
<표 4-37> 모자보호시설 인식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61
<표 4-38> 모자보호시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62
<표 4-39> 모자보호시설 운영방침에 대한 만족도	63
<표 4-40> 모자보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성실성에 대한 만족도	63
<표 4-41> 입소자, 퇴소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만족도	64
<표 4-42> 퇴소자의 시설입소전과 퇴소 후의 달라진 점	65
<표 4-43> 시설입소 기간 중의 애로점	65
<표 4-44> 시설입소 생활 중 가장 도움이 된 분야	66
<표 4-45> 입소자, 퇴소자의 모자보호시설의 개선 및 건의사항	6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전통사회의 대가족제도하에서는 가족이 생산, 소비 및 분배,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합 그리고 상호부조와 같은 모든 사회적 기능들을 수행해 왔으나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경제 생산이 가정에서 공장으로 바뀌고, 경제활동의 주체가 전문화됨으로 인해 생산이나 분배가 가정에서 분리되었다.

또한 사회통제와 사회통합은 정치제도와 종교제도에 의해 행해짐으로서 현대산업사회에서의 가족의 기능은 점점 축소되고 소비활동과 사회화의 기능이 주축이 되었다.

그리고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화는 전통사회에서의 가족이 갖는 공동체적 유대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각종 산업재해나 사고, 복잡한 도시환경에서의 빈번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의 증가, 여성들의 직업활동과 노동참여의 증가,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생활변화에 따른 이혼증가, 미혼모 발생 등으로 편부·편모가정의 발생을 증가시켰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와 그에 따른 가족제도의 소가족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사별, 유기, 별거, 기타 여러 사유로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사실상 여성이 가계의 책임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모자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¹⁾.

우리 나라도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근대화를 통해 단기간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경제성장위주의 국가정책은 국민의 복지욕구와 삶의 질 향상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옴으로서 성장과 복지의 불균형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켰고 이러한 사회경제구조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IMF시기에는 사회·제도적인 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실직자의 발생은 노숙자의 대량 발생, 이혼 및 아동유기, 시설입소 아

1) 신섭중(2000),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p.343.

동 증가, 자살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야기 시키며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됨을 체험하였고, 그 혼란은 IMF상황중식을 고한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불안을 체험한 우리는 그 동안 소홀했던 국민의 복지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어 4대 사회보험과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시행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계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모자가정은 자활, 자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빈곤가정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문제는 세계적인 특징이 되어있으며 그 이유는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또는 소득 획득능력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간의 소득차이는 여성이 저소득, 낮은 고용안정성, 승진결여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노동시장에 차별적으로 집중배치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되면서 모자가정의 자녀들과 관련된 가출, 청소년 비행, 미혼부모문제, 약물중독 등과 같은 자녀탈선의 문제와 여성가장의 스트레스로 인한 아동학대, 아동유기, 가정해체 등의 또 다른 사회문제들이 파생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자가정은 특성상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의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주거의 문제, 의료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지님으로 단순한 빈곤대책 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모자복지법이 제정된 1989년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적절하고 종합적이며, 개별화된 복지서비스와 자활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가보호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만6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학용품비 지원, 생업자금융자 등이 있으며 시설보호는 이러한 서비스에 3년간의 주거제공 및 생계급여 지원, 의료급여1종 지원 등이 추가된다.

시설보호는 주거 및 생계 안정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자활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그러나 3년이라는 모자보호시설에서의 입소기간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의 모자가정이 자립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며 무엇보다 그 기간에 시설보호를 통해 제공되는 제반 서비스는 모자가정이 자활·자립하는데는 미흡한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자가정의 특성과 자활의 저해요인 및 지원내용을 살펴보고, 모자가정의 자활지원을 단기간에 가장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모자보호시설이 시설모자가정들의 자활·자립을 위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지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모자보호시설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모자복지정책 및 시행의 기초자료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모자가정의 개념 정의와 특성, 외국과 우리 나라의 모자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시설보호의 필요성과 모자보호시설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모자보호시설의 현황과 모자보호시설의 운영체계를 입소 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정적인 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방법과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모자보호시설 서비스의 문제점을 생업활동 지원의 부족, 모자보호시설 및 주거지원 부족, 자녀양육 및 교육의 미흡, 보건·의료서비스의 부족, 모자보호시설 전문인력의 부족, 시설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및 소극적 운영, 모자복지정책의 미흡으로 7가지를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은 생업활동지원 강화, 모자보호시설의 확충 및 주거지원강화, 야간보육 및 교육지원 강화 및 확대, 보건·의료서비스의 강화, 상담 및 전달체

계 상의 전문인력 확충, 시설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적극적 운영, 종합적인 모자복지 정책의 실시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논문의 결론을 기술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 모자가정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실증적 연구는 모자보호시설의 입소대기자, 입소자, 퇴소자에 대한 조사연구로 실시하였다.

제3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이 서울시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로 한정하였으며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전체 시설입소자에 대해 설문하지 못하고 일부대상세대를 설문하였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가 전체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의 의견을 대신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모자보호시설을 이용하고 퇴소한 세대에 대한 추적상담을 통해 모자가정의 자립에 미치는 모자보호시설 서비스의 효과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했으나 시설퇴소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되는 상태에서 퇴소자 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일부 퇴소자에 대해 조사했으므로 조사결과가 퇴소자의 보편적인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모자가정의 정의

1. 모자가정의 정의

모자가정이란 영어로 female(Mother)-headed family, unsupported mothers, fatherless family 또는 one-parent family라고 하며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 별거, 유기, 실종, 투옥 등으로 장기간 부재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 세대주이면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야만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²⁾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남편이 결손된 상태에서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자가정을 모자 가족, 모자세대, 여성가구주가정, 여성세대주가족, 미망인가구 등과 혼용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서로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되는 개념은 아니다.³⁾

여성가구주 가정은 남편과 사별했거나, 실종, 이혼, 별거, 유기, 투옥 등으로 장기간 부재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장애나 병으로 인하여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야만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을 말한다.⁴⁾ 이것은 배우자의 경제적 사회적 기능의 정지로 가정의 생계와 자녀의 양육 또는 교육문제 등 다중적 곤란을 여성가구주에게 맡겨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된 여성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현실성을 배려한 개념이며⁵⁾ 유배우 및 미혼여성까지 포함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여성세대주가족은 주민등록상에 세대주가 여성인 가족으로서 여성가구주가정과 반드시

2) 신섭중(2000),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p.345.

3) 김태진(1999), 『여성복지론』, 사회복지개발연구원, pp.45-46.

4) 김영모외(1982), 『현대사회복지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pp.210-211.

5) 이상욱(1999), 「모자보호시정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증진방안」, 대구대학교사회개발대학원석사학위논문, p.14.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부인이 세대주이고 남편이나 성인 만아들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어 사실상 여성가구주 가정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미망인가구는 남편이 없다는 뜻으로 자녀들이 18세 이상으로 장성한 경우도 있고 아예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다.⁶⁾

모자복지법 제4조에서는 모자가정의 정의를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이에 준 하는 여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⁷⁾에 해당하는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으로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아동은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 정의는 배우자의 유무와 배우자의 근로능력 여부를 고려한 개념이며 여성가장이면서 부양을 받아야 할 18세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여성으로 한정짓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여성이란 모자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배우자의 유무나 배우자의 근로능력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거부, 부양기피, 유기, 가정폭력 등과 같이 여성과 어린 자녀들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2. 모자가정의 특성

모자가정은 원인이 사별에 의하거나 이혼에 의하거나 가족해체로 인한 가족체계의 긴장을 초래하고 가족의 평형을 깨뜨린다.

따라서 모자가족은 경제적 문제, 자녀교육 문제,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사회복지정책의 미비에 따른 대안 부재 외에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등이 유발되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⁸⁾

6) 김정자(1988), 『저소득층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20.

7) 모자복지시행규칙 제2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3.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모자가정의 모는 통상적인 어머니와 가정주부로서의 역할 외에도 경제적 가장 및 일반적인 아버지가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며 남편이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호작용적인 모든 역할을 새로이 정리하여 기존의 역할을 변화시켜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모자가정에 있어서 남편의 사별과 기타 조건에 의한 결별은 여성의 사회적 환경을 기본적으로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거시키면서 새로운 사회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서 일정시간까지 여성 혼자서는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처하게 된다.

모자가정은 형태상 모에게는 남편과의 사별이나 이별로 인해 가족 본래의 기능인 성적 기능, 경제적 기능, 자녀의 사회화 기능 및 교육기능이 상실, 축소되게 됨으로 많은 장애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모는 성적, 정서적 안정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

어머니로서의 가사나 육아 외에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추가됨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받아 긴장상태에 빠지게 되며 특히 경제적으로 곤란한 모자가정의 경우 그 모가 가족생계를 위한 생업에 종사하게 됨으로 다른 가족 즉, 자녀들에게 과중한 역할부담을 주게되어 가족성원의 정서나 가족간 상호작용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문제로 모가 생계활동에 전념하게 됨으로 자연히 자녀양육이나 교육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으로 발생하는 이탈행동과 자녀들의 동일시 대상의 상실로 인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남자아이의 경우 가족 내에서 동성인 남성의 역할을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여자아이의 경우 이성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 심리·정서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많은 미혼모가 모자가정 출신이라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점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모자가정의 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문제이다. 모자가정은 이별 전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했던 남편을 잃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배우자와의 이별로 인한 소득감소와 편모의 경제적 활동의 무경험과 낮은 학력수준, 경쟁력 있는 기술의 부재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갖게 되는 열악한 지위와 직업을 갖게되는 열악한 지위와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할 지

8) 이소희 외(1999),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p.205.

9) 장인협(1987),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p.233-234.

라도 단순 일용노무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금이 낮고 매우 불안정한 근무조건을 가지게 되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와 연결된다. 또한 모자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거문제를 들고 있다. 이 주거문제는 편모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기적인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외에도 부채변제에 대한 문제, 질병에 의한 의료비, 자녀의 교육비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¹⁰⁾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여성은 배우자의 부재로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생활을 하며 수입이 불안정하여 편모들이 생계유지 및 자녀양육을 위해 직업을 찾으려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및 판매 직종이 아닌 다른 직업을 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편모들의 배우자와 이별로 인한 여성의 빈곤화는 여성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편모의 취업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서비스업종, 근로자 및 판매직이 36.6%, 농업이 23.9%, 단순노무직이 23.9% 종사하고 있는 반면 전문, 기술, 행정직에는 3.2%에 불과하다(통계청, 1996).

또 이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대부분이 시간제가 많고 전형적인 저임금직종이어서 취업만으로 그들의 가계를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다.

둘째, 정서적 문제이다. 남편과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삶을 살던 여성은 배우자와의 이별로 커다란 상실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혼에 의한 배우자와의 이별은 자녀와의 별거로 인한 외로움과 우리 주위에서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사회활동, 재혼의 기회 등에 있어서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배우자와 이별 후 감정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을 인식하게 되고 외로움, 허탈감,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며, 생활에서 부딪치는 절망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셋째, 대인관계 문제이다. 배우자와의 이별이라는 '생의 충격'으로 인해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의 축소와 그에 따른 지원의 감소 및 사회활동의 위축 등과 같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체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김선아(1998), 「모자보호시설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평가」,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 석사학위논문, p.12.

대부분의 편부모들은 이별한 배우자의 친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데 그 원인은 배우자의 친족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중심매개자가 없으므로 접촉을 유지할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편모가족은 정신적·실제적 도움을 제공받을 사회적 지원망이 필요하게 되는데 본인의 친족관계, 친구는 사회적·정서적 주요 자원으로 여러 종류의 생애위기에 대한 적응에 중요한 매개변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들과의 관계가 배우자 상실 후 소원한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그 이유로는 '상호 멀어져서'가 39.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가 22.5%를 보이고 있다.

넷째, 자녀양육 문제이다. 모자가정의 문제 중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 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직업과 자녀양육의 양립을 어려운 점으로 들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교육은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을 강요하기 때문에 직장과 자녀교육을 양립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자녀가 어릴 때는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학령기에는 학교교육을 돌봐 줄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즉, 편모의 과중한 역할수행은 자녀와의 접촉시간의 절대 부족으로 나타난다. 자녀 또한 하루의 대부분을 아동 보육시설에서 지내거나 혼자 지내게 된다. 그 결과 자녀는 아버지의 상실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생활은 단지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모자가정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른 맞벌이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생활유형이다.

저소득층 편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빈곤과 함께 자녀양육에 관해 상의할 대상이 없고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어려움을 들고 있다.

그리고 편모의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을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 그 양상을 살펴보면 학령 전기의 자녀를 둔 편모는 부(父)의 부재로 인한 자녀 성격상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였으며, 초등학교 학령기인 자녀를 둔 편모는 그와 더불어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역할 재조정 문제이다. 모자가정은 배우자와의 이별 후 역할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한다. 이 역할 재조정 방식은 성별, 지역별, 또는 제 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섯째,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의 미흡이다. 모자가정을 위한 사회복지대책은 모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빈곤가족이나 요보호 가족 중심이며 보호의 수준은 최

소한의 생계지원에 그칠 뿐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이밖에도 의료적 문제, 탈선의 문제 등으로 논하고 있다.

제2절 모자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1. 외국의 모자복지제도¹¹⁾

전세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편모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에는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이 많았었으나 점점 이혼과 미혼모로 인한 모자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은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독일

독일은 기존에 아내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로 발달해 왔으나 최근에는 다른 시각들이 제기됨으로 여성의 시간제 노동에 대한 인정과 무급으로 수행되어온 보호노동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1993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2년동안 세금이 면제되고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수당이 지급된다. 출산 전부터 취업하고 있던 편모에게는 3년간의 모성휴가가 적용되며, 이전의 직장으로의 복귀가 보장된다. 즉, 여성가구주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지만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보육서비스 제공보다는 아동이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 스웨덴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모든 여성들을 혼인 상태의 차이와 무관하게 평등화시키는 데 있

11) 박영란·황정임(2001), 「외국의 여성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60호, 여성개발원, pp.160-162.

신섭중(2000),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pp.352-359.

박영란(1998),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46-55.

다. 이는 스웨덴의 사회복지 제도가 개인의 시민권과 거주권에 근거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적고 공적재화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시에서 편부모 가구의 아동은 공적인 아동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며 모든 어머니에게 소득의 75%를 보상하여 주는 육아휴직(parental leave)이 보장된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자녀양육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적으며 모자가정 가구주는 근로자이면서 어머니로서의 지위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것의 대부분은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이다. 즉, 질병 및 부모보험, 연호 등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분야, 조세 주택 및 교육정책분야 등에서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3) 영국

영국에서도 모자가정과 미혼모를 동일한 서비스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에서는 1940년대에는 모자가정이 국가보조의 대상이었으나, 이후에 가족수당이 아동급여로 바뀌어 전 아동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가족면제급여가 도입되어 시간제 근로를 하는 모자가정의 모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었다. 편모들은 사회보장급여, 자신의 임금, 전 배우자의 부양비로 소득이 구성되나 사회보장급여의 비중이 가장 높다. 사회보장정책의 보편성 때문에 모자복지정책이라고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주 수혜자가 모자가정인 보충부조혜택제도는 질병, 과부가 되거나 퇴직 등의 이유로 한가족의 생계가 절대최저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를 위하여 생계조사를 통하여 사회부조를 하는 종합적 국가부조제도를 가족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되는 부조금 외에 집세와 재산세 부조, 난방비 및 광열비 지급, 우유와 비타민의 무료지급, 시약요금 면제, 학교급식 무료, 변호사 비용보조 및 무료변호 등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 제도는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적고 부양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돕는 제도이다. 1990년 이래로 영국의 모자복지정책은 공적 지원에서 근로소득 및 남성으로부터의 사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과 아동보육서비스 현황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4) 프랑스

세계에서 가족정책이 제일 잘 마련되어 있는 나라로 모자정책과 관련 있는 사회복지제도로는 가족수당제도, 출산보험, 사회부조, 가족서비스 등이 있다.

첫째, 가족수당제도는 급여 종류가 다양한데 목적에 따라 부양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일반적 급여로서 가족수당, 보충가족수당, 출산을 위한 급여로 산전수당, 산후수당 및 주거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가족수당이 급여액이 많으며 보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급여의 재원은 자영업자는 소득의 9%, 사용자는 지불보수의 9%를 납입해야하고 급여조건은 피부양 자녀 및 수급권자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상정하고 있다.

둘째, 출산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 출산 전후, 휴가중의 소득감소,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이다. 출산에 따른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질병보험보다 유리한 급여를 내용으로 한다.

셋째, 사회보조제도로써 수입 혹은 자산이 없는 자 또는 수입이 불충분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충적 성질을 갖는 법적 급여의 총체를 의미하며 관리 주체는 지방공공단체지만 비용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

넷째, 가족서비스로서 탁아, 가족상담, 각종 세제혜택 및 주택정책 등이며 2인 이상의 부양자녀 가족에게 교통운임의 할인혜택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회복지정책은 여성보다는 아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5) 호주

호주에서는 한부모연금을 통하여 아동복지차원에서 모자가정의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새로 고쳐진 가족세금보조 프로그램은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보통 남성 배우자)가 세금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되므로 아동보호의 비용은 다시 가족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고 편부모가정과 중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급여를 이용하기가 더욱 힘들어 졌다.

6) 미국

미국의 잔여적인 복지체제는 여성가구주를 빈곤할 뿐 아니라, 의존적인 집단이며 가족을 붕괴시키는 집단으로 간주하며 아동양육은 사적인 문제로 간주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여성

취업을 돕는 국가차원에서의 모성휴가나 아동양육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생계비, 주거보장, 보육지원, 식품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계비지원 위주의 아동부양가족프로그램(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이 저소득 가정을 위한 한시적 지원프로그램(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으로 바뀌면서 모자가정 여성들의 취업지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7) 일본

일본은 1970년대 이래로 유족 여성가구는 감소하고, 이혼에 의한 여성가구는 증가하고 있다. 일본 모자가정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의 재혼과 동거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이 큰 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모자가정 여성들이 재혼을 통해 편모의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공적부조에 따른 낙인효과가 매우 커서 모자가정의 15%만이 정부의 공적부조 급여를 받고 있다.

일본의 모자복지서비스는 우리 나라의 모자복지법의 내용과 유사하며 모자복지자금의 대부(사업개시자금, 사업계속자금, 기능습득자금, 수학자금, 수업자금, 취업지도 자금, 요양자금, 생활자금, 주택자금, 이주자금, 취학지도자금), 모자복지단체에 대한 대부, 매점설치 허가, 전매품 판매의 허가, 공영주택의 공급에 관한 특별배려,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 관한 고용협력, 모자복지시설, 모자복지 센터, 모자 휴양홈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엄격한 소득 조사를 통해 주어지는 서비스들이며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많은 모자가정들은 자녀들의 수입과 부모의 도움, 그리고 낙인이 보다 적은 아동양육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모자가정에 관한 정책은 일을 통한 여성가구주의 자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에 대한 공공지출이 삭감되었다.

2. 우리 나라의 모자복지제도¹²⁾

우리 나라의 모자복지는 6.25 전쟁미망인을 위한 모자보호시설의 설치로부터 시작되었

12) 신섭중(2000), 앞의 책, pp.359-369.

다고 할 수 있다.¹³⁾ 즉 1950년 6.25전쟁으로 수많은 전쟁미망인들이 발생함으로 그들에 대한 구호대책이 시급하여 조선 구호령 제12조에 의하여 1951년도부터 사설모자원 즉, 민간에 의한 모자원 설치를 적극 권장함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 등이 모자원을 설립하여 모자를 동시에 수용 보호함으로서 가족해체의 위험을 사전예방하고 아동을 어머니의 돌봄으로 자라게 하며, 모는 시설의 보호아래 자립의 터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사설모자원은 1958년 전국적으로 67개소까지 증가하였다. 정부에서도 전쟁미망인 구호를 위해 국립 서울 자매원과 국립 부산 자매원을 설립하고 불우한 여성들을 수용보호, 기술을 지도하였다. 수많은 전쟁미망인과 불우미망인들 중 13세 이하의 자녀를 3인 이상 가진 생계불능한 대상과 그 세대를 수용 보호하고, 사설모자원에 시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1953년 국립 중앙전쟁미망인 수용소를 설치하고, 1954년에 국립 서울모자원으로 명칭을 개칭하였고, 1963년 11월 16일 각 영 제1718호로 국립 직업보도소로 직제를 개정하여 일반여성에 대한 기술보도 기관으로 면모를 갖추었다가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으로 통합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로 사별, 이혼, 미혼모, 산업재해, 교통사고, 실종선고와 같은 새로운 원인들에 의한 모자가정이 발생하게 됨으로 모자가정의 수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따라 모자복지의 중요성은 새로이 인식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전쟁미망인이 줄어들면서 모자원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20여 년 동안 뚜렷한 변동이 없었다. 이 시기의 모자복지시설은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 및 생활보호법에 의거 설치, 운영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낡은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모자보호시설의 개축에 착수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현대적인 모습의 건물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9년 4월1일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9년 12월31일 모자복지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1990년 6월 5일 모자복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대책이 완

13) 원요한(1990), 「모자보호시설의 실태 및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pp.17-21.

비되었다.

이 법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모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 그 수요를 파악,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생활보호법과 별개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법의 제정 및 시행은 종전의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던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여성세대주의 자격으로서 그 가족과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보호내용에서도 시설보호만이 아닌 재가보호와 전문적인 사회사업서비스를 위시해서 종합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내용은 크게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로 나뉘며 재가보호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및 직업훈련비 등의 급여와 복지자금의 대여 및 고용촉진 등이 있고 시설보호는 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모자가정에 대해 시설입소, 보호함으로써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급여의 수준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며 무엇보다 모자가정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할 심리, 정서적 상담 및 가족기능의 보완이나 강화를 위한 제반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제3절 모자가정의 시설보호

1. 모자가정의 시설보호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자가정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가족으로 가족복지적 입장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대상이다.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에서 시설보호 중 모자보호시설은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시설보호사업은 모자복지사업 중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¹⁴⁾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모자일체의 원칙, 생존권 및 최저생활보장, 생활조직체계의 강화, 위기해소, 자립기반 구축에 비추어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¹⁵⁾

14) 이상옥(1999), 「모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증진방안」, 대구대학교사회개발대학원석사학위논문, p.18.

첫째, 모자일체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자복지의 기반이 성립되는 것이다.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은 모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모자복지법에서도 이 원칙의 가치를 인정하여 모자보호시설을 두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생존권 및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모자복지사업은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헌법 제32조 1항,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할 권리를 가진다.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자가정의 모와 자에 대한 법의 보호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자가정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보장의 수반과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심신육성에 필요한 제조건의 보장이 필요하며 이는 시설보호를 통해 집중적으로 제반 서비스와 더불어 자립기반조성기반을 마련토록 할 수 있다.

셋째, 생활조직체계의 강화로 현대사회는 각종 사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모든 인간은 크거나 작거나 사회적 체계인 사회조직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약화된 모자가족이 하나의 조직체로서 존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다 큰 사회조직체계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위기해소이다. 생계책임자이며 가장인 남편의 불의의 사망이나 이별 등의 경험은 생활의 안정과 균형이 깨지면서 그 가족은 충격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공포감, 상실감, 절망감의 반응을 보이며 이러한 반응이 계속되면 그 가족은 해체되거나 문제가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때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 적절히 개입되면 그 가족은 다시 균형유지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자보호시설은 위기개입서비스의 하나로서 가족의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자립기반구축이다.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기능의 관여는 소극적인 일시보호가 아닌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의존적 육구의 충족이나 보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자 스스로가 자립을 도모하여 가정생활안정과 향상을 기하게 함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천하는 가족체계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 제반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의를 지닌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모자보호시설 서비스의 장점은 빈곤한 모자가정의 생계를 보장하고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특

15) 장인협(1987),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p.230-233.

히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집세'라는 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모자가정이 성취해야 하는 가장 큰 과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생계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일 것이다. 그래서 시설보호는 그 자체가 경제적 원조역할을 하며, 주거문제를 해결해줌으로서 자립을 위한 저축을 보다 많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소 후 안정적인 생활수단을 마련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모자보호시설은 가족 전체를 보호하는 시설로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며 상담원이 있어 모의 정서적, 심리적 갈등에 대해 개입하게 되며 시설 내의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어머니들과의 자조모임 등으로 약화된 지지체계를 지원할 수도 있다.¹⁶⁾

이러한 모자보호시설의 장점과 의의를 살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정이 진정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설보호 내에서도 좀 더 개별화되고 전문화된 그러면서도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모자보호시설의 기능

모자보호시설은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이 함께 입소, 보호받으며 생계 및 주거안정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받으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모자보호시설에서는 입소가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모자보호시설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족해체 예방의 기능이다. 즉 모자보호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다르게 가족전체를 보호함으로써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양부모의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에 대해 모(母)와 함께 하는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입소가족에 대한 최저한의 생계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기능이다. 즉 입소 모자가

16) 김선아(1998), 「모자보호시설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평가」,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논문, p.16.

정은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함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시설생계급여를 받게 됨으로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받게 된다. 입소가족에 대한 최저한의 생계보장은 입소 모(母)의 적은 소득을 보조하기도 하며 생계부담을 경감시킴으로 소득향상을 위한 취업훈련과 창업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급함으로 자립기반조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주거안정의 기능이다. 입소 모자가정은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대부분 적은 보증금의 월세나 전세에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생활했던 사람들로 시설입소는 이들의 생활에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입소기간 동안 없애주므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결국 이러한 주거비 부담은 입소 가족의 자립을 위한 저축의 증가와 연결됨으로 자립기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의 기능이다. 재가보호에서 자녀들의 방과후 또는 보육으로 인해 안심하고 취업할 수 없었던 입소 모(母)는 시설에 입소함으로 자녀들의 보육 및 방과 후 교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업지도, 청소년 프로그램 등 보호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으므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며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모(母)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게 된다.

다섯째, 심리·정서적 안정의 기능이다. 입소 모자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모자복지법에 의한 재가보호에서 무주택에 따른 주거비 부담, 자녀양육 및 교육의 부담, 생계의 부담 등 여성가장으로서의 심리·정서적인 압박감을 받으며 생활하던 가족이다. 그러나 시설입소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시설의 보호와 지원으로 경감되고 상담원을 통한 각종 상담서비스가 지원됨으로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자보호시설의 다양한 기능은 입소 모자가정의 변화되는 특성과 욕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제 모자가정의 문제들이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심리·정서적 문제, 사회적 문제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경제적 지원에 치우쳐 있던 그 동안의 모자보호시설 서비스가 심리·정서적 문제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적인 문제로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3장 모자보호시설 현황

제1절 모자보호시설 현황

모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모자복지시설은 모자복지법에 19조에 정한 시설로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자가정상담소가 있다.

모자복지시설은 크게 일정기간 모자가정의 모와 자녀를 수용,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거주시설과 모자가정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상담업무 등을 행하는 이용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모자복지시설은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이 있다. 이러한 시설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정하고 있다. 또한 모자복지법 제19조에서의 시설설치 목적과 모자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명시된 보호기간과 2001년도 여성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한 입소절차 및 보호내용도 <표 3-1>에 제시하였다.

모자복지시설 중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계지원과 자립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일명 모자원이라고 하는 모자보호시설이다.

모자보호시설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로서 18세미만의(취학 시 20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과 미혼모시설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가 입소대상이 된다.

입소과정은 시·도, 시·군·구 또는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하며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모자보호시설의 지원내용은 생계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비지원,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복지자금 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2년 이상 기거 후 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지원(세대 당 200만원),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 비용 지원, 훈련기간 중 가계보조수당 등 훈련수당 지급,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비 등이 있다.

<표 3-1> 모자복지시설의 종류 및 보호내용

구분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목 적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 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함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	-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
입 소 대 상	-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로서 18세 미만(취학 시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 미혼모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정 -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로서 18세미만(취학 시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 배우자로부터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또는 모로서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 (6월 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미혼모로서 분만선택과 숙식 보호가 필요한 자
보 호 기 간	- 3년 이내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2년 이내 연장가능)	- 3년 이내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2년 이내 연장가능)	- 60일 이내 (필요시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출산 전·후 6월 이내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입 소 절차	- 시·도·시·군·구 또는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시·도·시·군·구 또는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시·도·시·군·구 또는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입소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에 우선 보호조치한 후 방문 상담을 받도록 함 ※ 신원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 없음.	- 시·도·시·군·구 또는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입소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에 우선 보호조치한 후 방문 상담을 받도록 함 ※ 신원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 없음.
보 호 내 용	- 생계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비 지원 -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 급식비 지급 - 복지자금 융자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 2년 이상 가거 후 시설 퇴소 시 자립장착금지원(세 대 당 20만원) -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 비용 지원 - 훈련기간 중 기계보조수당 등 훈련수당 지급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비 지원 - 복지자금 융자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비용 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숙식 무료 제공 - 의료지원 의료보호대상자로 관리 - 법률상담 상담상담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입소시설에 대한 비밀보장 - 방과 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원 - 중·고등학생은 학비 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숙식무료 제공 - 분만의료 지원 - 의료보호 적용 - 자립지원 - 직업교육 컴퓨터 기계지식, 홈페이지 양제 미용 등 - 인성교육 및 상담지도

제2절 모자보호시설의 운영체계

모자보호시설 운영체계에 대해 N.Gilbert와 H.Specht가 제시한 네 가지 준거 틀에 의거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모자보호시설에서 시설수급을 받고 있는 모자가정은 어떤 대상이며(Allocation), 어떤 서비스(Provision)를 어떻게 전달(Delivery)받고 그 재원(Finance)은 어떻게 충당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입소대상

우리 나라 모자보호시설은 1958년도 말에 총67개소의 모자보호시설에서 2,382세대 8,271명이 보호받다가 점차 시설이 감소되어 옴에 따라 2000.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는 39개소의 모자보호시설에서 총 943세대 2,595명이, 서울의 경우 7개 모자보호시설에서 총 157세대 398명이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¹⁷⁾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 즉 저소득 모자가정의 범위는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으로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표 3-2>에 나타난 선정기준과 같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모(母)로서 18세 미만(취학 시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가정이 해당된다.

<표 3-2> 2001년도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¹⁸⁾

재산	4,500만원 이하			5,000만원이하	5,500만원이하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	564천원이하	819천원이하	1,000천원이하	1,150천원이하	1,270천원이하

* 자료 : 서울시, 「2001 여성복지사업안내」, 2001.

위 기준에 의한 2001년도 모자가정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서울시 저소득 모자가정의 현황은 <표 3-3>과 같다.

17) 보건복지부(2000), '모자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18) 서울시(2001), 「2001 여성복지사업안내」, p.15.

<표 3-3> 2001년도 서울시 저소득 모자가정 현황

(단위: 세대/명)

구분	계		재가·시설보호(보호대상)						미보호		국민기초		국가보훈	
			소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모자	10,530	27,510	4,978	12,530	4,819	12,129	159	401	210	541	5,311	14,352	31	87

* 자료 : 서울시, 「2001 여성복지사업안내」, 2001.

모자보호시설 입소대상은 위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자가정 중 무주택 모자가정과 미혼모시설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다.

모자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입소대상자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표 3-4> 모자보호시설 입소대상 기준의 변화¹⁹⁾

년도	입소대상기준
1950년대	어머니 자신의 배우자가 없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없으므로 홀로 길러야 하는 여자나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 여자로서 그 가 보호해야 할 아동의 양육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녀들과 함께 수용한다
1960년대	전쟁미망인과 불우 미망인 등 중 13세 이하의 자녀를 3인 이상 가진 생계 불능한 대상과 그 세대를 수용 보호한다
1970년대	1 13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 있는 무의무탁하고 빈곤한 미망인 2 13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 있는 무의무탁하고 빈곤한 여자로서 남편이 실종 선고된 부녀자
1980년대	아동이 13세 미만 2인 이상 있는 불우하고 영세한 미망인과 남편이 실종 선고된 부녀자를 노령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그 부양자와 함께 3-4년을 수용보호하며 기본생계와 주거를 보장시킨다.
1984년	13세 미만의 자녀가 2인 이상 있는 무의무탁하고 극빈한 미망인 또는 남편과 사별했거나 실종, 이혼, 유기, 별거, 형집행 선고 등으로 장기간 부재하거나, 남편이 심신장애나 질병으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부녀자로서 모자원에 입소하여 3년 미만 기간내 기본 생계를 보장받으면서, 아동의 건전한 교육과 생계지립 기반을 조성할 것이 기대되는 여성대주 혹은 세대주격의 여성
1985년	15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이 있는 무의무탁하고 극빈한 미망인 또는 남편이 실종 선고된 부녀자
1990년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여성 - 모자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모의 범위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2)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3)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 받을 수 없는 여성 2 아동은 위의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 (다만 취학시에는 20세미만으로 한다)
2001년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로서 18세미만(취학 시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시설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정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

19) 원 요 한(1990), 앞의 논문, p.25.

2. 급여내용

1) 지원내용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시설수급자로 보호받게 되면서 입소자들은 생계급여를 비롯한 교육, 의료, 장제 등의 급여와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비에 의한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자체시비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국비 50%, 시비50%로 지원되고 있다.

지원내용 중 생계급여는 매월 지원기준에 의거 가족 수 별로 각 세대에 지원하며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매 분기 수업료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입원 및 외래 진료비가 전액 무료인 의료급여1종을 받는다. 그밖에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비용 지원, 방과 후 지도, 만6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 급량비, 중·고생 아동교통비, 직업훈련기간 중 가계보조수당 등 훈련수당 지급, 복지자금 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시설 수급자에 해당됨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되는 급여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 2001년도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내용²⁰⁾

구 분	항 목	급여기준	단 가	비 고
생계급여 (1인기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일반파복비 란닝·팬티세트 동 내 의 활동대책비 해산비 장제비 특별위로금	백미456g/일 정맥14g/일 1일 1일 년 년 4월 년 1월 인당 1인당 1구당 월8만원 2회	2048원/kg 720원/kg 1,606원 91원 67,158원 8,736원/월 11,938원/월 16,480원 180,000원 500,000원 2048원/kg	·양곡지원단가 적용 ·매월분할지급(월5,500원) ·매분기말(3,69,12월)지급 ·10월지급 ·10월지급 ·사망일 기준 지급 ·설 추석 5일전 지급
교육급여	중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중1,300원, 고13,700원 중132,000원, 고251,100원	
의료급여	의료급여종	입원 외래 진료비	전액무료	

20) 보건복지부(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p.86.

그밖에 모자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직원인건비 국고보조금 기준에 의해 지원되며 그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퇴직적립금, 종사자수당이 지원된다. 또한 입소자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항목 및 지원단가는 <표 3-6>과 같다.

<표 3-6> 2001년도 서울시 모자보호시설 지원항목 및 단가 21)

구분	항 목	지 원 단 가	국,시비보조기준
모 자 보 호 시 설 지 원 내 용	수용기관 경비 공공요금(1인/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대/년) 약품비(인/년) 의료비(인/년) 학용품비(인/년)	30,000원 35,000원 2000원/150일 1,843,000원 2,000원 30,000원 초등학생 16,000원 중학생 27,000원 고등학생 28,500원 60,000원 600원 600원 5,000원 300,000원	국비50% 시비50%
	부교재·교양도서비(인/년) 중고생교통비(인/240일) 아동급량비(인/만6세이하/365일) 프로그램운영비(인/초등학생이하/월) 대인·대물보험료(년/시설당)	60,000원 600원 600원 5,000원 300,000원	
	수용기관 경비(1인/년) 공공요금(1인/년) 난방연료비(1인/6개월) 퇴소자 자립정착금(퇴소시)	53,000원 57,000원 63,000원 세대당 200만원 (2년이상 거주후 퇴소세대)	시비100%

*자료: 서울특별시, '2001년 여성복지사업안내', 2001.

2) 프로그램

모자보호시설에서 입소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각 모자보호시설에서는 입소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예산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여름철 입소자 가족을 위한 하계수련회로 2001년 기준 1인당 20,000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2001년도부터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보호프로그램비가

21) 서울시(2001), 『2001년 여성복지사업안내』, p.103.

1인 월 5,000원씩 지원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시설의 도움을 통해 파악한 시설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표 3-7> 서울시 모자보호시설 프로그램 실시현황(2001년도)

구분	내 용
자립지원프로그램	어머니컴퓨터교실, 취업알선, 직업훈련 정보제공 및 의뢰, 이동후원,
자녀양육 및 교육	유아보육 및 방과후교실, 부모교육, 독서왕 및 다독상 시상, 어린이날행사, 체육대회, 워드대회, 컴퓨터교실, 독서실운영, 중고생집단상담, 개별학습지도, 장학금지급, 문집발간, 자녀교육상담, 가족상담, 지역사회내 복지관, 학원 등과 자녀교육프로그램 연계, 자원봉사자 활용 학습 및 정서지도, 영어교실, 음악교실, 청소년성교육
주거관련프로그램	전세자금대출정보제공, 영구임대주택신청 정보제공, 후원자연결
의료분야	치과무료진료, 독감무료예방접종, 정신과 치료알선, 아동건강검진,
정서, 심리 분야	중학생 성격유형검사, 모자가정 어머니의 역량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가족캠프, 아동 및 청소년 스키캠프, 어머니의 감동이 있는 여행,
기타	어머니 발맞사지 교육, 입소자 생일축하, 모범상 시상, 법률상담, 하계캠프, 야유회, 송년의 밤, 예배, 어머니모임이나 회의, 가족위안잔치, 성탄예배,

* 본 연구 조사시 2001년도 시설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자료.

서울시 모자보호시설에서 입소자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특히 유아보육 및 방과후교실에 대한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역 내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자보호시설 내의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전달체계

모자보호시설의 전달체계는 입·퇴소과정과 서비스 지원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입소과정을 살펴보면 시설입소는 입소대상자가 복지시설입소신청서를 각 동의 사회 복지전문요원이나 가정복지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구청에 시설입소 의뢰되어 자치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결정 및 시설 관할 구청에 입소의뢰 되며, 시설장은 이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 또는 대상자가 시설입소상담을 먼저하고, 자치구 상담원이 이를 확인하여 입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 시설에서의 퇴소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하고, 시설장은 즉시 구청장에 퇴소를 통보하게 되어있다.

시설 입·퇴소 과정에서 주요 담당자는 각 시·군·구의 업무담당과장, 담당계장, 여성상담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또는 가정복지담당자로 이들에 의해 입소대상자의 신청접수, 의뢰, 결정 등 입·퇴소 전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입소대상자가 직접 대면하고 상담하게 되는 여성복지상담원은 여성복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수석상담원과 일반상담원으로 구분되며 수석 상담원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 5급 또는 6급의 신분으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일반 상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직접 상담도 하면서 일반 상담원들을 지도 감독한다. 일반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사회복지행정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초등 및 중등학교 교사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들이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모자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자복지상담원은 규정은 있으나 실제 임용된 사례는 없고 여성상담원이 겸임가능하며 아동복지지도원이나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다.²²⁾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당초 1987년도부터 별정직 7급으로 임용되어 생활보호 등 공적부조사업을 담당해 오다 지난 1999년 12월에 사회복지직렬로 전환되어 2001년 현재 전국에서 5,500여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공적부조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다.

모자보호시설은 모자복지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므로 입소한 모자가정은 시설수급자로 제반 급여를 지원 받게 된다.

모자보호시설의 지원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달체계를 보면 <표 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 가정보건복지심의관, 여성보건복지과에서 주관하며 서울시의 경우 여성정책관, 가정복지담당관에서, 시,군구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의 여성복지계나 여성·청소년계에서 모부자가정담당 및 여성복지시설담당자에 의해 지원 관리되고 있다.

22) 김선아(1998), 「모자보호시설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평가」, p.35.

서울시의 경우 7개 모자보호시설이 있는 자치구로는 구로, 노원, 성북, 용산 4개 구로 업무담당자는 여성복지상담원 3명과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이 있다.

<표 3-8>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분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 가정보건복지심의관 → 여성보건복지과
서울시, 직할시, 도	여성정책관 → 가정복지담당관
시,군,구청	생활복지국 등 →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 등 → 여성복지계, 여성청소년계 등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 · 가정복지담당

* 보건복지부, 서울시 행정조직도(기관별 홈페이지)

모자보호시설에서 입소자에 대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시설장과 총무, 상담원, 경비, 사무원 또는 보조원 등으로 그 수와 자격기준은 모자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서 정하고 있다.

<표 3-9> 모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모자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관련)

구분 \ 시설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시설장	1인	1인 (입소세대가 상시 5세대이하인 경우 제외)	1인	1인
총무	1인	-	1인	1인
상담원	1인	1인 (입소세대가 상시 10세대이하인 경우를 제외)	3인	1인
사무원 또는 보조원	1인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	1인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1인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경비원	1인	-	1인	1인 (입소정원이 20인 이상인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	1인	-
영양사	-	-	1인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1인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취사원	-	-	1인	1인 (입소정원이 20인 이상인 경우)

<표 3-10> 모자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모자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관련)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총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상담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행정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여성학·사회학·사회사업학·법학·신학·의학·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관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시설장의 자격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자료: 모자복지법 시행규칙

4. 재정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비는 OECD회원국가들 중 하위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회원국의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를 보면 스웨덴 33.4%, 덴마크32.6%, 프랑스30.1%, 독일 29.6%, 영국 22.8%미국16.3% 일본 14.1%인데 비해 한국은 5.3%로 OECD 회원국의 1/5-1/2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²³⁾

또한 우리 나라의 중앙정부예산 중 사회보장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70,017 억원이었으며 2001년도에는 정부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81,460억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 11,443억원이 증가하여 1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⁴⁾

이 사회복지예산 중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2000년도 지원예산은 재가 보호에서 중고생 학비지원에 23,336명에 9,775백만원, 6세미만 자녀 아동양육비로 6,099명에 대해 928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생업자금융자로 188세대에 대해 2,098백만원이 지원되

23) 주간 사회복지신문, 제502호, 4면.

24) 기획예산처 인터넷자료(www.mpb.go.kr).

었다. 시설보호에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지원은 전국41개소 996세대에 대해 3,619백만원을 지원되었다. 2001년도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예산은 재가보호는 20,309명에 대해 10,427백만원, 시설보호는 43개소에 6,529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다.²⁵⁾

서울시의 경우는 2000년도에는 모자가정 5,263세대 13,537명, 부자세대 761세대 1,996명으로 총 6,024세대 15,533명에 대해 재가보호는 6,418백만원이 소요되었다. 시설보호는 7개 모자보호시설에 대해 827백만원이 지원되어 저소득 편부모자가정에 대해 총 7,245백만원이 지원되었다. 2001년도에는 재가보호에 대해 6,295백만원, 시설보호로는 241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다.²⁶⁾

25) 여성부(2001),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0년도 시행실적 및 200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p.186.

26) 여성부(2001),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0년도 시행실적 및 2001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p.32.

제4장 모자보호시설의 서비스 조사결과 분석

제1절 조사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조사일 현재 서울시 모자보호시설 7개소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143세대에서 시설변경을 위해 자연감소 중인 1개 모자보호시설의 입소자 9명을 제외한 6개 모자보호시설입소자 134명 중 70세대, 그리고 서울시 6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신청하고 대기 중인 58세대 중 30세대, 또 입소기간이 만료되어 퇴소한 세대 중 시설관할 구청의 여성상담원 및 시설과 연락이 가능한 퇴소자 30세대를 추천받아 총 130세대의 세대주를 <표4-1>과 같이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01. 11. 5일부터 2001. 11. 15까지 시설장의 협조를 얻어 시설 거주모자가 정 세대주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시설모자가정 세대주가 직접 설문 작성하고 봉한 봉투를 시설총무가 회수하여 조사자에게 일괄 송부 하도록 했다. 입소대기자와 퇴소자는 각 30명씩 총60명에게 본 조사자가 직접 전화상담을 통해 설문동의를 받고 설문 조사하였다.

<표 4-1> 조사대상

(2001. 11월 5일 조사일 현재)

조 사 대 상			조사방법
조사대상자		표본크기(회수율)	
입소대기자	30세대	30세대(100%)	전화상담
입소자	70세대	50세대(71.4%)	설문지(우편조사)
퇴소자	30세대	30세대(100%)	전화상담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표 4-2>와 같은 내용으로 입소 대기자, 입소자, 퇴소자 세 집단에 대해 각 대상별로 설문지를 작성, 사용하였으며 입소 대기자에 대한 설문은 일반적 특성과 모자보호시설 입소신청실태와 시설입소 희망기간 및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입소자에 대한 설문은 시설입소 모자가정의 일반적인 특성과 시설입소과정, 시설입소전후의 경제, 주거, 자녀양육 및 교육, 의료, 정서, 시설운영과 관련된 실태와 만족도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시설에서 일정기간 생활하고 퇴소한 퇴소자에 대해서는 일반적 특성과 시설생활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시설에의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설문의 내용은 [부록 1, 2, 3] 과 같다.

<표 4-2> 조사내용

조사 대상	변인영역	변인(하위변인)
입소 대기자	일반적 특성	모와 가정환경적 특성(연령, 학력, 소득, 재산, 자녀수, 배우자부채사유, 모의 건강 상태, 주거상태, 자녀양육 및 교육 시 애로점, 자립에 필요한 것)
	시설입소 신청실태	입소신청 대기기간, 시설에 대한 최초정보입수경로, 입소신청사유, 희망입소기간, 시설입소를 통한 기대, 시설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
입소거주자	일반적 특성	연령, 학력, 입소 전 근로형태, 결혼상태, 종교, 자녀연령 및 학력, 주 소득원, 소득액, 재산액
	시설입소 실태	-입소과정의 실태 및 만족 (시설에 대한 최초정보입수 경로, 최초 상담자, 입소사유, 입소대기기간, 현재의 입소기간) -입소과정에 대한 만족도 (최초정보입수 경로, 시설관련 정보제공의 적절성, 절차의 복잡성, 대기기간의 적절성, 상담직원의 친절도)
	경제적 실태	경제적 실태(주소득원, 근로형태, 현재의 소득액과 재산액, 입소전후의 소득·재산변동현황, 월평균지출액, 월평균저축액, 시설입소후의 경제적 변화)
	주거실태	입소 전 주거형태 및 사용방수, 입소기간의 적절성, 시설입소후의 주거환경변화에 대한 만족도
	자녀양육 및 교육실태	입소전후의 미취학아동의 양육형태, 초·중·고등학생자녀의 방과후교육형태, 자녀교육 시 애로점 및 상담자, 자녀양육 및 교육 시 가장 필요한 점, 시설입소후의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변화
	의료서비스 실태	의료보장종류,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건강상태(모, 자녀), 시설입소후의 의료서비스변화 및 욕구
	정서적 실태	입소전 정서적 상담대상, 입소 전 상담욕구내용, 시설입소후의 심리, 정서적 변화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만족프로그램, 희망프로그램
	시설 운영에 대한 만족도	주거환경, 운영방침, 종사자의 전문성과 성실성, 전반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정도 및 시설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
퇴소자	일반적 특성	모와 가정 환경적 특성(연령, 학력, 소득, 재산, 자녀수, 시설입소기간)
	시설생활 만족실태	시설 입소 시 도움기대 정도, 주거환경, 운영방침, 종사자의 전문성과 성실성, 모자 보호시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시설보호를 통해 가장 도움이 지원, 입소기간의 충분성과 희망기간, 입소전과 퇴소 후의 변화내용, 입소기간 중 어려웠던 점, 시설에 대한 건의사항

3. 자료처리

조사결과 시설입소거주자에 대한 설문지는 6개 모자보호시설에 배부된 70매중 50부가 회수되어 71.4%가 회수되었고 입소대기자와 퇴소자 60세대에 대해서는 전화 설문한 결과 100% 설문이 가능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프로그램에 의해 1차적으로 각 항목별로 나타난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으며 2차적으로는 각 변인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유의성이 있는 항목만을 분석하였고 어떤 차원이 모자보호시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일부항목에서 응답자가 설문에 응하지 않은 것은 missing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항목 중 대상자가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한 개방식 문항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각 설문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최대한 본 연구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

설문조사결과 분석은 입소자의 설문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항목은 입소 대기자와 퇴소자의 설문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1. 일반적 특성

1) 연령

시설입소자 중 모(母)의 연령을 살펴보면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40대가 48%, 30대가 46%이며 20대가4%, 50대가 2%로 30대와 40대가 94%를 차지하고 있다.

입소대기자의 연령은 30대가 6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40대가 20.0%, 20대와 50대는 각 6.7%로 30대와 40대가 86.7%를 차지하고 있고 퇴소자는 40대가 53.3%, 50대가 26.7%, 30대가 16.7%, 20대가 3.3%로 40대와 50대가 80%로 퇴소 후의 세월이 지났음으로 모자보호시설에서의 생활시점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의 연령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대상의 연령분포 결과는 기존의 모자가정에 대한 연구 및 보건복지부의 모자가정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모자가정의 연령분포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의 범위가 18세미만의 자녀를 둔 모자가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과 우리 나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26.5세로 혼인연령이 높아지는 것과 모자가정 발생의 주된 사유인 이혼에서 여성의 평균이혼연령이 36.6세로 18세미만의 자녀들을 부양하는 모자가정의 주 연령층이 30대와 40대인 것이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3> 연령

구분		입소대기자		입소자		퇴소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20-29세	2	6.7	2	4	1	3.3
	30-39세	20	66.7	23	46	5	16.7
	40-49세	6	20.0	24	48	16	53.3
	50세이상	2	6.7	1	2	8	26.7

2) 학력

시설입소 모(母)의 교육수준을 보면 <표 4-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졸이 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졸 16%, 국졸과 대졸이 각 10%, 초대졸이 6%로 나타났다. 입소대기자 집단에서는 고졸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 23.3%, 국졸 16.7%, 초대졸 10%, 대졸이상 6.7%로 나타났다. 퇴소자 집단에서는 고졸 46.7%, 중졸 20%, 국졸 16.7%, 초대졸 및 대졸이상이 각 6.7%, 무학자가 3.3%로 나타났다.

모(母)의 학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고졸이하가 입소대기자 83.3%, 입소자 84%, 퇴소자 86.7%로 대부분이 고졸이하의 저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우리 나라와 같이 학력이 사회적인 지위와 소득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얼마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하겠다.

<표 4-4> 교육수준

구분		입소대기자		입소자		퇴소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무학	1	3.3	0	0	1	3.3
	국졸	5	16.7	5	10	5	16.7
	중졸	7	23.3	8	16	6	20.0
	고졸	12	40.0	29	58	14	46.7
	초대졸	3	10.0	3	6	2	6.7
	대졸이상	2	6.7	5	10	2	6.7

3) 결혼상태

모의 결혼상태를 보면 <표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소자의 경우 이혼 58%, 사별 26%, 미혼모 10%, 배우자의 행방불명, 유기, 별거가 6%로 나타났다. 입소대기자의 경우는 이혼 70%, 사별 16.7%, 배우자의 행방불명, 유기, 별거 10%, 미혼모 3.3%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에 대한 조사결과 이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별로 나타나 여성개발원의 박영란이 1997년도에 전국 모자보호시설에 대해 실시한 연구²⁷⁾에서 나타난 사별 45.4%, 이혼 38.7%의 비율과는 다른 것으로 조사지역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인 점과 그 사이 IMF시기를 거치면서 이혼가정이 더 많이 늘어났고 계속적으로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4-5> 결혼상태

구분		입소대기자		입소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결혼상태	사별	5	16.7	13	26
	이혼	21	70.0	29	58
	미혼모	1	3.3	5	10
	행방불명, 유기, 별거	3	10.0	3	6

27) 박영란(1998),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65.

4) 자녀수 및 자녀의 연령과 학력

모자보호시설 이용자의 자녀수와 연령 및 학력을 보면 <표 4-6> 및 <표 4-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입소자의 경우 자녀수가 1명인 경우가 50%, 퇴소자 집단에서는 1명과 2명인 경우가 46.7%로 동일하여 세 집단 모두 2명 이하의 자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대기자 집단에서는 2명의 자녀가 56.7%로 높게 나타났다.

<표 4-6> 자녀의 수

구분		입소대기자		입소자		퇴소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녀수	1명	9	30.0	25	50	14	46.7
	2명	17	56.7	22	44	14	46.7
	3명	4	13.3	3	6	1	3.3
	4명	0	0	0	0	1	3.3

입소자 자녀에 대한 연령과 학력에 대한 조사결과는 만6세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25.6%, 만 13세미만의 초등학교 아동이 44.2%. 만13세 이상에서 만15세미만의 중학생이 10명으로 12.8%, 만15세이상 만18세미만의 자녀가 20.5%로 초등학교 연령인 자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입소자 자녀의 연령 및 학력

구분	자녀연령	학력	빈도	백분율
입소자	만6세미만	미취학	20	25.6
	만7세이상-만13세미만	초등학교	31	44.2
	만13세이상-만15세이상	중학교	10	12.8
	만15세이상-만18세미만	고등학교	16	20.5
	만18세이상	전문대	1	1.2

자녀와 관련된 특성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자녀수와도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연령 및 학력이 13세미만 초등학교이하가 많은 것은 모의 연령과 상관이 있으며, 또

한 중, 고등학교 연령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사춘기로 예민한 자녀가 시설입소를 반대하거나 사용방수가 하나임으로 인해 입소를 고려치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시설입소과정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은 입소 신청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은 저소득 모자가정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고 모자보호시설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과정으로 모자보호시설입소 생활의 만족도와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1)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최초 정보제공 및 입소 상담자

저소득 모자가정이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어디에서 얻게 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표 4-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소자의 경우에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또는 가정복지담당과 구청여성상담원이 44%, 사회복지기관이나 상담소가 34%, 친구나 이웃사람이 20%, 신문·방송 등 매스컴에 의한 것이 2%정도로 나타났다. 입소 대기자도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가정복지업무담당자 또는 구청여성복지상담원과 같은 행정기관을 통해서가 46.7%, 친구나 이웃사람 30%, 사회복지기관이나 상담소 13.3%, 신문·방송 등 매스컴에 의한 것 6.7%, 기타 본인의 거주지역에 있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모자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최초 상담은 <표 4-9>에 나타난 바와 같이 60%의 입소자가 구청여성복지상담원과 가장 처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동사무소 담당, 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직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모자원에 대한 정보 최초 입수경로

구분		입소대기자		입소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모자원에 대한 정보 최초 입수경로	동사무소 담당(사회, 가정)이나 구청여성상담원	14	46.7	22	44
	친구, 이웃사람	9	30.0	10	20
	사회복지기관이나 상담소	4	13.3	17	34
	신문, 방송 등 매스컴	2	6.7	1	2
	기타	1	3.3	0	0

<표 4-9> 모자원 입소를 위한 최초 상담자

구분		입소자	
		빈도	백분율
모자원입소에 대한 최초 상담자	동사무소 담당(사회, 가정)	16	32
	구청여성상담원	30	60
	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직원	3	6
	기타	1	2

위와 같은 결과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선정 및 관리가 주로 동사무소와 구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모자원 입소업무가 구청 여성상담원과의 상담과 의뢰로 이루어지므로 일선 행정기관에서의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리, 정보제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2) 입소사유 및 기대하는 시설서비스

모자보호시설 입소사유를 보면 <표 4-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소자는 경제적 도움이 38%, 주거안정이 36%, 자녀양육 및 교육해결 18% 순으로 나타나 가장 큰 입소사유는 주거안정 및 경제적 도움임을 알 수 있다. 입소대기자의 경우도 주거안정이 50%, 경제적 도움이 33.3%. 자녀양육 및 교육이 13.3%로 나타났다.

<표 4-10> 입소사유

구분		입소대기자		입소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입소사유	경제적 지원	10	33.3	19	38
	주거안정	15	50.0	18	36
	자녀양육 및 교육해결	4	13.3	9	18
	심리정서적 안정	0	0	4	8
	기타	1	3.3	0	0

모자보호시설에 기대하는 도움의 내용을 입소대기자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 <표 4-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양육 및 교육이 50%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도움, 주거안정, 취업 등으로 나타났다.

모자보호시설에서 받고자 하는 서비스 종류를 세 가지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사교육비지원이 가장 많은 37%, 생계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34.2%, 본인이나 자녀상담과 가족야유회나 청소년정서함양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적 안정이 20.5%, 질병치료 5.5%, 영구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입소대기자들이 모자보호시설 서비스에 대해 대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1> 시설에 기대하는 도움과 받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

구분		빈도	백분율
모자보호 시설에 기대하는 도움	경제적안정	10	33.3
	주거안정(주거시설개선 등)	4	13.3
	자녀양육 및 교육	15	50.0
	기타(취업)	1	3.3
모자보호 시설에서 받고자하는 주요서비스 종류(3가지)	생계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경제적 지원	25	37
	자녀보육 및 사교육비지원	27	34.2
	개별상담, 가족야유회 및 청소년정서함양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	15	20.5
	질병치료	4	5.5
	영구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및 기타 자녀 책상 등 가구지원	2	2.7

3) 희망입소기간

희망하는 입소기간조사 결과를 보면 <표 4-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년 이상 자녀 성장 시까지 또는 자립할 때까지로 장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소자가 60%의 높은 비율인 것으로 보아 주거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입소자나 퇴소자에 대해 입소기간 3년이 자립하는데 충분한가에 입소자의 68%가, 퇴소자의 70%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어 교육비가 계속 들어가야 함으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기는 힘들어 전세방이라도

마련하여 퇴소하기에 3년은 너무 짧다는 것이다.

<표 4-12> 희망 입소기간

구 분		입소대기자		입소자		퇴소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희망하거나 자립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입소기간	3년	11	36.7	16	32	9	30.0
	4년	1	3.3	2	4	1	3.3
	5년이상 자녀성장이나 자립까지	18	60.0	32	64	20	66.7

4) 모자보호시설 관련 입소자의 인식

모자보호시설 입소과정에 대한 입소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표4-13>와 같이 나타났다. <표 4-13>의 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3.0점에서 3.4점 사이로 약간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입소자 특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3> 시설입소 과정에 대한 인식

구 분		N	Mean	Std.D.	t
연령별	30대 이하	24	3.4	0.7	0.460
	40대 이상	24	3.3	0.5	
학력별	고졸 이하	40	3.3	0.6	0.308
	전문대졸 이상	8	3.3	0.7	
결혼상태	사 별	14	3.3	0.5	1.182
	이 혼	26	3.4	0.6	
	기 타	8	3.0	0.7	
소득	50만원 미만	30	3.4	0.6	1.543
	50-100만원	18	3.1	0.6	
입소 사유	경제 및 자녀문제 해결	26	3.3	0.7	0.059
	주거 및 심리적 안정	22	3.3	0.5	

3. 경제적 실태

1) 소득상황과 입소 후의 소득변화

입소자의 소득상황을 보면 <표 4-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소 전에는 38%가 소득이 없거나 50만원미만인 경우였으나 시설입소 후에는 22%만이 50만원이하의 소득이 있다고 하였으며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경우가 14%정도로 나타나 시설입소가 미흡하나마 소득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입소대기자는 월평균 소득액이 없거나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66.7%로 현재의 입소자들이 입소 전의 소득상황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퇴소자의 경우는 소득향상이 크게 있다고 볼 수 없으나 20%정도는 100만원이상의 소득으로 나타났다.

<표 4-14> 소득상황

구분		입소대기자		입소자 (입소전)		입소자 (시설입소후)		퇴소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월 평 균 소 득	없음	6	20.0	2	4	2	4	1	3.3
	50만원미만	14	46.7	17	34	9	18	10	33.3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0	33.3	31	62	32	64	13	43.3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0	0	0	0	7	14	4	13.3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0	0	0	0	0	0	1	3.3
	300만원이상	0	0	0	0	0	0	1	3.3

입소자들의 시설입소 전·후의 소득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소자의 60%가 소득증가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52%는 20만원이상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생계비 등 정부보조금의 지급, 취업, 후원금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표 4-15> 입소 후의 소득변화

구분				빈도	백분율
입소 전, 후의 소득변동 비교	없다			14	28
	증가 (60%)	10만원이상 -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증가		4	8
		사유	정부보조금지급	26	52
			취업 후원금증가	17 12 1	34 24 2
	감소 (12%)	10만원이상 -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감소		2	4
		사유	실직	4	8
			일거리감소 질병	3 1 2	6 2 4

2) 재산상황과 입소 후의 재산변화

입소자의 입소 전 재산상황을 보면 <표 4-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없는 경우가 58%,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2%로 90%정도가 1,000만원미만의 재산액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입소 후인 현재는 46%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32%가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78%정도가 1,000만원 미만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소 후 재산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대기자의 경우도 입소자의 입소 전의 상황과 유사한 80%정도가 1000만원 미만의 재산액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액의 거의 전부가 주거보증금인 것을 감안할 때 열악한 주거상태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재산액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전세자금 융자나 부채로 인한 재산액(보증금)의 상환, 보증금 없는 월세, 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거주 등의 경우였다.

한편 1000만원 이상의 재산액인 경우는 입소 전에는 10%정도에 불과했으나 입소 후에는 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소자의 경우는 30%정도가 1000만원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소자들의 시설입소 전·후의 재산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표 4-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소자의 46%가 재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저

축, 후원금 증가 등이었다.

<표 4-16> 재산상황

구분		입소대기자		입소자 (입소전)		입소자 (시설입소후)		퇴소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재 산 액	없음	10	33.3	29	58	23	46	4	13.3
	1000만원미만	14	46.7	16	32	16	32	17	56.7
	1000만원이상-2000만원미만	4	13.3	4	8	7	14	5	16.7
	2000만원이상-3000만원미만	2	6.7	1	2	3	6	2	6.7
	3000만원이상-4500만원미만	0	0	0	0	2	4	1	3.3
	4500만원이상	0	0	0	0	0	0	1	3.3

<표 4-17> 입소 후의 재산변화

구분				빈도	백분율
입소 전, 후의 재산변동 비교	없다			24	48
	증가 (46)	100만원미만		1	2
		1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13	26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		5	10
		1000만원이상		4	8
		사유	저축	19	38
			부모,친지도움	1	2
			시설 및 복지기관의 후원금	3	6
	감소 (6)	1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3	6
		사유	빚갚음	2	4
			자녀교육비충당	1	2

3) 지출과 저축

입소자들의 현재 소득과 지출, 저축액을 비교해 보면<표 4-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은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가 가장 많은 64%로 나타났으며 지출은 50만원미만이 54%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소자의 70%가 월 1만원이상 저축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월10만원이상 50만원미만의 금액을 저축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54%로 나타났으며 월 50만원 이상 저축을 하는 세대도 4%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입소자가 평균소득은 부족하지만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소득의 많은 부분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에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8> 입소자의 월평균 소득, 지출, 저축현황

구 분		빈도	백분율
현재의 소득	없음	2	4
	50만원미만	9	18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32	64
	100만원이상	7	14
월평균지출액	50만원미만	27	54
	50만원이상~80만원미만	17	34
	80만원이상~100만원미만	4	8
	100만원이상	2	4
월평균 저축액	없음	15	30
	1만원이상 - 10만원미만	6	12
	10만원이상 - 50만원미만	27	54
	50만원이상	2	4

4) 근로형태

경제활동을 위한 근로형태에서 입소자의 시설 입소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임시고용이나 일일고용에 56%정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30-40대 이상의 연령대와 고졸이하의 저학력 등이 많은 모의 특성 상 노동시장에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고 취약한 고용형태에 처하게 되어 신체적인 노동과 노동시간에 비해 저임금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4-19> 시설입소 전후의 근로형태

구분		입소자(입소전)		입소자(시설입소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근로형태	상시고용	5	10	8	16
	임시고용	15	30	13	26
	일일고용	13	26	15	30
	자영업	4	8	3	6
	기타	13	26	11	22

5) 경제적 변화에 대한 인식

입소자들은 시설입소 후의 경제적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표 4-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 걱정 없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다 80%로 나타났다. 이는 모가 어린 자녀들을 생업으로 돌볼 수 없는 처지에 있다가 시설입소를 함으로 자녀들의 보육 및 방과 후의 프로그램 등으로 자녀들이 방치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됨으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짐작된다. 생계비 지원에 대한 도움여부에 대해서 78%, 저축증가가 58%, 후원금이나 기타 생활용품 지원증가에 50%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시설입소가 경제적 자립에 크게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입소자의 78%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답을 하여 대부분의 입소자들이 시설입소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동안 재가보호에서 생계걱정으로 직업 훈련을 받기 어려웠을 입소자는 38%정도가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하였고 30%정도는 부정적으로 답하여 시설입소를 하여도 직업훈련 참여는 상당부분 생계부담을 갖고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취업알선이나 취업상담부분에서는 시설로부터의 지원에 42%가 부정적으로 답하였으며 24%만이 긍정적으로 답해 시설에서의 취업알선, 취업상담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부족을 알 수 있다. 시설입소를 통해 생활환경이 변화됨으로 인해 일거리가 감소했거나 현재 실직 중인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56%가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들이 시설 입소로 인해 일거리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자에 대한 조사에서도 모자보호시설 생활에서 가장 도움된 것에서 주거안정 다음으로 경제적 도움을 꼽았으며 입소전과 퇴소 후에 달라진 점에서도 부채감, 전세금 마련, 목돈 마련에 의한 경제적 안정을 들었다.

<표 4-20> 시설입소 후의 경제적 변화에 대한 인식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약간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집 걱정 없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다.	30	30	10	20	7	14	3	6	0	0	50	100
생계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17	34	2	4	16	32	8	16	7	14	50	100
언제나 취업알선이나 취업상담이 가능	9	18	3	6	17	34	12	24	9	18	50	100
정부보조금 지원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28	56	11	22	8	16	2	4	1	2	50	100
후원금이나 기타 생활용품 지원의 증가	16	32	9	18	11	22	10	20	4	8	50	100
시설입소가 경제적 자립에 크게 도움된다	32	64	7	14	9	18	1	2	1	2	50	100
저축의 증가	23	46	6	12	10	20	8	16	3	6	50	100
생활환경의 변화로 일거리감소 및 실직 중	5	10	8	16	9	18	5	10	23	46	50	100

모자보호시설 입소후의 경제적 변화에 대한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입소자 특성별로 차이검증을 한 결과 <표 4-21>과 같이 나타났다.

<표 4-21> 경제적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구 분		N	Mean	Std.D.	t
연령별	30대 이하	24	3.3	0.7	-2.451*
	40대 이상	24	3.7	0.6	
학력별	고졸 이하	40	3.5	0.7	-1.277
	전문대졸 이상	8	3.7	0.5	
결혼상태	사 별	14	3.7	0.8	1.919
	이 혼	26	3.5	0.6	
	기 타	8	3.1	0.8	
소득	50만원 미만	30	3.5	0.7	-0.534
	50-100만원	18	3.6	0.7	
입소 사유	경제 및 자녀문제 해결	26	3.5	0.7	-0.506
	주거 및 심리적 안정	22	3.6	0.7	

* $p<.05$

<표 4-21>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3.1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다소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입소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에서 통계적인 유의성 ($p<.05$)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3.3점, 40대 이상은 3.7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0대보다는 40대의 경우 경제적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자보호시설이 30대 보다는 40대에게 경제적 변화에 상대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주거실태

1) 주거상태

입소자의 입소 전 주거상태를 보면 <표 4-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증금 있는 월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료임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했던 경우로 나타났다.

사용방수는 1개인 경우가 입소자의 62%이었으며 2개인 경우는 26%로 나타나 주거상황이 좋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입소대기자의 40%가 보증금 있는 월세, 30%가 전세, 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무료임대, 보증금 없는 월세 등의 주거상태이며 사용방수가 1개인 경우가 31%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그러므로 입소 대기자들은 주거안정이 자립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주거상태

구분		입소대기자		입소자의 입소전 주거상태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주거상태	무료임대(친정집, 아는사람 등)	3	10.0	7	14.0
	보증금 없는 월세	2	6.7	9	18.0
	보증금 있는 월세	12	40.0	17	34.0
	전세	9	30.0	11	22.0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4	13.3	6	12.0
사용방수	1개			31	62.0
	2개			13	26.0
	3개이상	-	-	2	4.0
	(기타)			4	8.0

2) 시설입소후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입소자들의 시설입소 후의 주거생활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표 4-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거환경이 많이 좋아졌느냐는 질문에 62%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답하여 취약했던 모자가정의 주거상황이 시설입소를 통해 입소 전보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입소를 통해 월세 등 주거비부담이 없어짐으로 생활비가 감소했다고 대답한 경우가 62%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부담 중 주거비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입소 전보다 현재 주거시설이 좋다는 문항에 48%가 매우 그렇다, 14%가 약간 그렇다 18%가 보통이다로 답해 모자보호시설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입소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자들에 대한 시설생

활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을 순서대로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해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사용방수에 대해서는 모자보호시설의 방수가 대부분 1개로 자녀들의 방을 따로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자녀들은 자기 방을 갖지 못함으로 50%정도가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주거공간이 부족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36%정도로 나왔으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34%정도 나와 시설의 주거공간에 대한 입소자들의 불만이 조금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시설 부족에 있어서도 36%정도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해 모자보호시설의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한 경우는 8%정도가 난방시설의 미흡, 내부 시설의 구조의 협소, 적은 방수로 인한 별도 자녀방 없음, 공동화장실 사용, 수돗물부족 등의 위생시설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표 4-23> 시설입소후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입소 후 주거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21	42	10	20	13	26	4	8	2	4	50	100
시설의 주거공간이 부족하다	4	8	14	28	15	30	7	14	10	20	50	100
입소전보다 현재 주거시설이 좋다	24	48	7	14	9	18	4	8	6	12	50	100
자녀들은 자기방이 없어 불만이다	11	22	14	28	11	22	6	12	8	16	50	100
시설의 다른 공간도 자유롭게 이용	13	26	13	26	14	28	6	12	4	8	50	100
부대시설의 부족	7	14	11	22	21	42	4	8	7	14	50	100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희망	24	48	8	16	11	22	4	8	2	4	50	100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않음	16	32	17	34	11	22	4	8	2	4	50	100
주거비용감소로 생활비용감소	21	42	10	20	11	22	4	4	4	4	50	100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들은 시설 주거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입소자 특성

별로 분석해 본 결과 <표 4-24>와 같다.

<표 4-24>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

구 분		N	Mean	Std.D.	t
연령별	30대 이하	24	3.3	0.5	-2.075
	40대 이상	24	3.6	0.6	
학력별	고졸 이하	40	3.4	0.6	-0.770
	전문대졸 이상	8	3.6	0.5	
결혼상태	사 별	14	3.7	0.6	3.095
	이 혼	26	3.5	0.5	
	기 타	8	3.1	0.4	
소득	50만원 미만	30	3.5	0.6	1.066
	50-100만원	18	3.4	0.6	
입소 사유	경제 및 자녀문제 해결	26	3.5	0.6	0.210
	주거 및 심리적 안정	22	3.4	0.5	

* $p < .05$

<표 4-24>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3.1점에서 3.7점 수준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입소자 특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자녀양육 및 교육 실태

1) 자녀양육 및 교육의 애로점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교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4-2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입소대기자는 사교육비, 저소득 자녀임으로 인한 교육적 차별, 자녀학업 지도의 문제와 생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함, 자녀의 정서불안이나 방황 등으로 인한 자녀행동 통제불능을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외 질병 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

주거불안정 등의 애로점을 답하였다.

입소자들도 시설입소 전에 학업지도에 대해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아버지부재로 인한 상실감, 자녀행동통제불능, 식사문제 등을 들었다.

이것은 입소 전 어머니들이 자녀양육 및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답한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 지원이나 시설 내 학습지도 프로그램과 같이 학습지도와 관련된 답이 68%정도로 나타난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에 종사하여야 함으로 인해 자녀들과 함께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대부분 저학력으로 자녀들의 학업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사교육비지원이나 자녀학업지도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 자녀양육 및 교육의 애로점과 가장 필요한 도움

구 분		입소대기자		입소자(입소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녀양육 및 교육상 애로점	식사	1	33	7	14
	질병치료	3	100	5	10
	학업지도(사교육, 교육차별)	11	367	15	30
	자녀행동통제불능(정서불안, 방황, 함께 할 시간부족 등)	11	367	12	24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	2	67	9	18
	기타(주거불안정, 없다)	2	67	2	4
입소 전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	시설 학원 이용비 지원			23	46
	시설 내 학습지도 프로그램			11	22
	부모교육프로그램			5	1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훈련	-	-	3	6
	직업훈련상담			4	8
	기타			4	8

2) 시설입소 후의 자녀양육 및 교육의 변화

시설입소 후의 자녀양육 및 교육의 변화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4-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소 후 자녀들의 생활이 많이 안정 되었다에 60%정도가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자녀양육 및 교육상담에서 56%, 시설 내 방과후 지도나 탁아 프로그램에 대해 45%,

학습지도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40%정도가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또한 시설입소 후 자녀양육 및 교육이 훨씬 도움된다에 64%정도가 긍정적으로 답하여 시설입소 후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들은 생업에 종사함으로 인해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자녀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56%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답해 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 및 교육상담에 대해서는 입소 전에 46%의 어머니들이 스스로 해결했다, 22%가 부모나 형제, 자매와 상담했다고 답했으며 입소 후에도 32%정도의 어머니들이 자녀상담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는 큰데 비해 그러한 문제들을 자신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전문기관이나 모자보호시설 상담원 등과 상담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6> 시설입소 후 자녀양육 및 교육의 변화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입소 후 자녀들의 생활이 많이 안정되었다	19	38	11	22	16	32	2	4	1	2	50	100
아동교육과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이 크게 도움된다	15	30	13	26	12	24	6	12	2	4	50	100
시설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지도와 타이가 큰 도움된다	19	38	5	10	13	26	8	16	1	2	50	100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와 교육프로그램이 큰 도움된다	16	32	4	8	19	38	8	16	2	4	50	100
시설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자녀들이 싫어한다	11	22	6	12	14	28	7	14	8	16	50	100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19	38	9	18	18	36	2	4	0	0	50	100
시설직원들과 아동교육과 양육에 대해 상담을 많이 한다	10	20	6	12	17	34	9	18	7	14	50	100
시설입소 후 자녀들 문제로 다른 어머니와 싸운 적이 있다	2	4	5	10	6	12	5	10	29	58	50	100
시설에서의 자녀교육 및 양육이 입소전보다 훨씬 도움된다	23	46	9	18	10	20	4	8	3	6	50	100

퇴소자의 시설생활에서의 도움정도에서도 주거안정, 경제적 도움 다음으로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또한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시설에의 건의사항에서 자녀들이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귀가 후에 실시하는 시설에서의 야간 보육이나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어머니들이 직장생활을 마음놓고 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입소자의 자녀양육 및 교육변화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27>에 서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27>의 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3.1점에서 3.9점으로 보통을 상회하고 있어 자녀양육 및 교육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입소자 특성별로 분석해 보면,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p<.01$)가 나타나고 있다.

<표 4-27> 자녀양육 및 교육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구 분		N	Mean	Std.D.	t
연령별	30대 이하	21	3.3	0.7	-1.591
	40대 이상	20	3.6	0.6	
학력별	고졸 이하	33	3.5	0.7	-0.331
	전문대졸 이상	8	3.5	0.5	
결혼상태	사 별	11	3.9	0.5	3.734**
	이 혼	24	3.4	0.7	
	기 타	6	3.1	0.4	
소득	50만원 미만	25	3.6	0.7	1.566
	50-100만원	16	3.3	0.6	
입소 사유	경제 및 자녀문제 해결	23	3.4	0.7	-1.069
	주거 및 심리적 안정	18	3.6	0.6	

* $p<.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별한 경우 3.9점, 이혼한 경우 3.4점, 기타의 경우 3.1점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입소 후 자녀양육 및 교육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의료서비스 실태

1) 이용의료기관 현황

의료서비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표 4-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입소 후 입소자들은 의료급여1종을 받게 되며 질병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동네의원이 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이용 의료기관 현황

조사내용	세부항목	빈도	백분율
의료보장종류	의료급여 1종	48	96
	직장 건강보험	2	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약국	3	6
	동네의원	39	78
	종합병원	4	8
	보건소	4	8

2) 질병상태

입소자들의 질병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표 4-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한 질병 및 장애가 없다에 54%정도가 응답하였으나 스스로 자각하는 건강상태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활동에는 지장 없지만 자주 아프다’가 58%, ‘일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많이 아프다’가 14%, ‘너무 아파서 현재 일을 못하고 치료중이다’가 4% 정도로 응답자의 76%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24%만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질병있다고 답한 42%정도 중 95%이상이 관절, 허리디스크, 요통 등의 신체질환으로 근로형태가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파출부, 식당일, 미싱 시다 등의 일일고용이나 임시고용 형태가 많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2% 정도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뚜렷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스스로 자각하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은 그

동안의 생활스트레스나 노동강도가 높은 생업에 종사함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로 등이 쌓임으로 인한 것과 생계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간단한 질병 시 치료하지 못함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해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입소자 자녀들은 건강이 대체로 양호하여 질병 및 장애없다가 84%였으며 질병있다고 답한 16%정도의 자녀들은 피부질환, 충농증, 비염 등의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입소자의 질병현황

조사내용	세부항목		빈도	백분율
건강상태	건강하다		12	24
	활동에는 지장 없지만 자주 아프다		29	58
	일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많이 아프다		7	14
	너무 아파서 현재 일을 못하고 치료중이다		2	4
본인의 질병 및 장애 여부	질병, 장애 없다		27	54
	질병있다(21명, 42%)	신체질환(허리디스크, 요통, 관절 등)	20	40
		정신질환(우울증)	1	2
	장애 있다(3명, 6%)	지체	-	-
		사각	3	6
자녀의 질병 및 장애여부	질병, 장애 없다		42	84
	질병있다(8명, 16%)	신체질환(피부질환, 비염, 충농증 등)	8	16
		정신질환	-	-
	장애 있다	지체	-	-
		사각	-	-

3) 시설입소 후 의료서비스 변화에 대한 인식

시설입소 후의 의료서비스 변화에 대한 입소자의 응답의 결과를 보면 <표 4-3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들이 아프면 모자보호시설 직원들이 우선 조치해 준다’에서 28%가 약간 그렇다가, 기타 자궁암 등의 암진단을 자주 받는다 28%, 무료진료30%, 질병예방 및 보건서비스가 많다 26%가 ‘보통이다’로 응답하여 시설입소 후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입소자의 인식은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의료급여 1종 사용에 대해서 입소자의 대부분은 보통이상으로 사용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24%정도인 일부 입소자가 불편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입소전보다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에 대해서는 74%가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또한 보건소의 정기적인 방문진료에 대해서는 90% 정도가 보통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바쁜 생업으로 인해 병원이용이 용이치 못한 입소자들이 보건소의 방문진료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4-30> 시설입소 후의 의료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인식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입소전 보다 암이나 자궁암 진단을 자주 받을 수 있다	3	6	5	10	14	28	10	20	12	24	50	100
질병예방 및 보건서비스가 많다	11	22	12	24	13	26	7	14	4	8	50	100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17	34	9	18	11	22	5	10	4	6	50	100
질병 시 다른 입소자들이 도움을 주기도 한다	5	10	8	16	16	32	3	6	14	28	50	100
모 부재 시 자녀가 다치거나 아프면 직원이 우선 조치한다	22	44	14	28	8	16	2	4	1	2	50	100
시설에 장애인이 생활하기 불편하다	12	24	9	18	13	26	2	4	8	16	50	100
의료급여 1종은 불편함이 많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1	8	8	16	17	34	6	12	14	28	50	100
무료진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8	16	7	14	15	30	9	18	8	16	50	100
보건소에서 시설로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나왔으면 좋겠다.	21	42	10	20	14	28	3	6	0	0	50	100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입소자 특성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31>과 같이 나타났다.

<표 4-31>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차이

구 분		N	Mean	Std.D.	t
연령별	30대 이하	24	2.8	1.0	-1.343
	40대 이상	23	3.2	0.9	
학력별	고졸 이하	40	3.0	1.0	-0.882
	전문대졸 이상	7	3.2	0.6	
결혼상태	사 별	13	3.4	0.8	1.568
	이 혼	26	3.0	1.0	
	기 타	8	2.6	1.2	
소득	50만원 미만	30	3.2	0.8	1.245
	50-100만원	17	2.8	1.2	
입소 사유	경제 및 자녀문제 해결	25	2.8	1.1	-1.376
	주거 및 심리적 안정	22	3.2	0.8	

<표 4-31>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2점 대와 3점 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통의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입소자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7. 정서적 실태

1) 입소자의 심리·정서적 서비스 이용 현황

입소자는 시설입소 전에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장 받고 싶었던 상담내용은 <표 4-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58%, 생활상담20%,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12%, 본인의 스트레스 6%, 재혼문제 4%로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자녀 및 가족부양의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전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상담자는 친척, 친구, 이웃사람들과 같은 사적인 관계인 경우가 52%였으며 사회복지기관 직원이나 구청여성상담원, 동사무소 사회담당 등의 상담전문인력을 찾은 경우는 32%로 나타나 아직도 많은 모자가정이 자신들의 문제들을 전문상담기관이나 도움을 줄 만한 상담자를 찾기보다 사적 인간관계에서 조언 정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32> 시설입소 전 심리·정서적 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내용	세부항목	빈도	백분율
입소 전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상담했던 사람	친척	11	22
	친구	9	18
	이웃사람	6	12
	사회복지기관 직원	8	16
	구청여성상담원	7	14
	동사무소 사회담당	1	2
	기타	8	16
입소 전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받고 싶었던 상담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29	58
	본인의 스트레스	3	6
	생활상담	10	20
	직업훈련, 취업알선	6	12
	재혼문제	2	4

2) 시설입소 후의 심리·정서적 변화에 대한 인식

입소자의 시설입소 후의 심리·정서적인 변화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보면 <표 4-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신적 고충해결을 위한 시설직원과의 상담에서 22%만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50%정도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시설 내 생활스트레스 해소프로그램 실시여부에 대해서 22%는 긍정적이었고, 50%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시설에서 우울증진단이나 심리테스트, 가족치료나 정신과적 진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내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소자들은 시설입소로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다에 60%가 긍정적 답을 하였으며 6%정도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시설입소로 불안감이 많이 없어졌는가 의 질문에 대해서도 72%가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시설입소로 일정기간이나 주거불안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됨으로

그로 인한 생활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불안감에서도 약간은 홀가분해짐으로 정신적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입소자들은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60%가 평안하다고 느끼며 시설의 생활규칙에 대해서는 12%만이 약간 부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시설입소 후의 심리·정서적 변화에 대한 인식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정신적, 심리적 고충해결을 위해 시설직원과 자주 상담 한다	6	12	5	10	14	28	11	22	14	28	50	100
생활스트레스 해소프로그램이 시설에 있다	5	10	6	12	14	28	11	22	14	28	50	100
시설에서 우울증진단이나 심리테스트를 받아 보았다	1	2	3	6	8	16	10	20	28	56	50	100
시설소개로 가족치료나 정신과적 진찰을 받은 적이 있다	3	6	2	4	2	4	11	22	32	64	50	100
시설입소로 불안감이 많이 없어졌다	19	38	12	24	15	30	4	8	0	0	50	100
시설 내 야매들간의 친목 자지모임이 있다	6	12	9	18	12	24	8	16	15	30	50	100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고 편하다	21	42	9	18	17	34	2	4	1	2	50	100
시설생활은 규칙이 엄격하여 나를 구속하고 부자유하다	0	0	6	12	11	22	14	28	19	38	50	100
시설입소로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다	20	40	10	20	17	34	2	4	1	2	50	100

입소자들의 심리·정서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34>과 같이 나타났다.

<표 4-34>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3점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 심리·정서적 서비스에 대해 보통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입소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다.

<표 4-34> 심리·정서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 차이

구 분		N	Mean	Std.D.	t
연령별	30대 이하	24	2.8	0.6	-2.109*
	40대 이상	24	3.2	0.7	
학력별	고졸 이하	40	3.0	0.7	-0.975
	전문대졸 이상	8	3.1	0.3	
결혼상태	사 별	14	3.1	0.9	0.518
	이 혼	26	2.9	0.6	
	기 타	8	2.9	0.6	
소득	50만원 미만	30	2.9	0.7	-0.963
	50-100만원	18	3.1	0.6	
입소 사유	경제 및 자녀문제 해결	26	2.9	0.6	-0.841
	주거 및 심리적 안정	22	3.1	0.8	

* $p < .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경우 2.8점, 40대 이상의 경우 3.2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0대 이상인 입소자들이 30대 이하의 입소자들보다 심리·정서적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자보호시설의 심리·정서적 서비스가 40대 이상의 입소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30-40대 입소자들 모두에게 적절한 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3) 입소자가 만족하는 정서적 프로그램 및 희망하는 서비스

입소자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준 프로그램을 보면 <표 4-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캠프를 가장 많이 선호(48%)하였으며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각종 취미교실(32%),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3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입소자가 만족하거나 희망하는 서비스

조사내용	세부항목	빈도	백분율
시설프로그램 중 정서적 도움을 준 것	가족캠프	24	4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훈련	4	8
	어머니집단상담	2	4
	부모교육	2	4
	외부강사초빙특강	6	12
	기타(없음, 신앙생활)	12	24
본인과 자녀의 정서함양을 위해 희망하는 프로그램	노래자랑 등 음악회	2	4
	각종 취미교실	16	32
	야유회나 캠프	4	8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	15	30
	체육대회	2	4
	기타	11	22

퇴소자에 대한 시설입소 전과 퇴소 후의 달라진 점에 관한 조사에서 시설입소 생활을 통해 생활위기를 극복할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사별, 이혼, 부채 등 삶의 위기에서 겪은 정신적 압박감과 가정해체위기에서 시설입소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저소득 모자가정의 시설입소는 정신적·심리적 안정에 있어서도 대체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8.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인식 차원별 상관관계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입소자들의 인식차원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4-36>와 같이 나타났다.

<표 4-36>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각 차원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자녀양육 및 교육변화에 대한 인식과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간 상관계수(.71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변화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 변화에 대한 인식간 상관계수(.589)가 그 다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항목별 상관관계

	경제적 변화에 대한 인식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자녀양육 및 교육변화에 대한 인식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심리정서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
경제적 변화에 대한 인식	1.000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0.346*	1.000			
자녀양육 및 교육 변화에 대한 인식	0.589***	0.710***	1.000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0.491***	0.217	0.426**	1.000	
심리정서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	0.588***	0.502***	0.458**	0.398**	1.000

** p<.01 *** p<.001

이러한 각 차원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차원이 모자보호시설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상대적인 비중이 높은지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4-37>과 같이 나타났다.

<표 4-37> 모자보호시설 인식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항 목	R	R Square	R Square Change	F	Beta
자녀양육 및 교육변화에 대한 인식	0.599	0.359	0.359	25.787***	-0.375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0.660	0.435	0.076	17.333***	-0.356

*** p<.001

<표 4-37>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자보호시설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43.5%를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양육 및 교육변화에 대한 인식이 35.9%를 설명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이 0.7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자보호시설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자녀양육 및 교육변화에 대한

인식과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입소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입소자들의 자녀양육 및 교육 부문과 주거환경에 우선적인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9. 시설운영에 대한 조사 결과

1) 모자보호시설의 주거환경

주거환경에 관한 입소자들과 퇴소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표 4-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소자의 48%가, 퇴소자의 83.3%가 적절했다고 답하였고 부족하다는 13%, 6%로 그 이유는 모자보호시설의 방수가 한 개라는 것과 공동화장실, 수도물 부족, 난방 미흡, 좁은 내부구조가 있었다.

<표 4-38> 모자보호시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구분		입소자		퇴소자	
문항	세부 항목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모자보호시설 주거환경	적절하다	24	48	25	83.3
	보통이다	22	44	1	3.3
	부족하다	4	8	4	13.3
	부족사유	적은 방수(방한개편) 위생시설 미흡(공동화장실, 수도물부족) 난방시설 미흡(보일러고장, 출다) 내부시설개선요망(썩크대, 비좁은 내부문)		적은 방수 난방시설 미흡 기타(입소 전 주거환경에 비해 미흡)	

2) 모자보호시설의 운영방침

모자보호시설의 운영방침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표 4-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소자의 48%, 퇴소자는 66.7%가 바람직하다고 답하였으며 퇴소자 중 3%정도는 직원들의 행정편의적

태도와 종교행사에 치중하는 것이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고 이유를 제시하였다.

<표 4-39> 모자보호시설 운영방침에 대한 만족도

구분		입소자		퇴소자	
문 항	세부 항목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시설운영방침	바람직하다	24	48	20	66.7
	보통이다	26	52	9	30.0
	바람직하지 못하다	0	0	1	3.3
				직원들의 행정 편의적 태도 종교행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	

3) 모자보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성실성

모자보호시설 직원들의 서비스의 전문성과 성실성에 대한 질문에서 입소자의 94%, 퇴소자의 86.7%는 그렇다고 긍정적인 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유로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며 경력이나 연령 상 입소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입소자들이 쉽게 상담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불친절하다, 입소기간이 짧아 아직 파악 못했다는 답변이 있다.

<표 4-40> 모자보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성실성에 대한 만족도

구분		입소자		퇴소자	
문 항	세부 항목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시설직원은 전문적이고 성실한 서비스를 했는가	그렇다	47	94	26	86.7
	그렇지 않다	2	4	4	13.3
	무응답	1	2	-	-
	그렇지 않은 이유	불친절하다 보통이다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직원이 자주 바뀐다 직원의 경력이나 연령상 입소자 이해부족	

4) 기타 시설 프로그램 및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표 4-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소자는 70%, 퇴소자는 86.7%가 아주 만족, 약간 만족으로 평가했으며 불만을 표명한 입소자의 2%, 퇴소자의 13%의 의견은 입소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전혀 배려가 없다, 예배나 다른 모자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었다고 하였다.

<표 4-41> 입소자, 퇴소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만족도

구분		입소자		퇴소자	
문항	세부 항목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시설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아주 만족하였다	23	46	23	76.7
	약간 만족하였다	12	24	3	10.0
	보통이었다	14	28	1	3.3
	약간 불만족이었다	1	2	2	10.0
	아주 불만족이었다	0	0	1	3.3

5) 퇴소자의 시설 퇴소 후의 변화

퇴소자에 대해 시설 입소 전과 퇴소 후의 달라진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경제적 안정으로 시설입소 기간을 통해 어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하여 퇴소할 때는 입소전보다 나은 주거를 마련하였거나 부채를 갚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입소 전 생활의 불안정으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침체되었던 것이 시설입소를 통해 안정을 찾게 됨으로 어떠한 위기라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밖에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였다. 시설입소기간 중 휴식과 질병치료를 잘 받을 수 있어 건강이 회복되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연결되어 주거문제가 해결되었다 등의 조사결과가 있었다.

<표 4-42> 퇴소자의 시설입소전과 퇴소 후의 달라진 점

구분	내 용
입소전과 퇴소후의 달라진 점	1. 경제적 안정(목돈마련, 주거비마련, 부채갚음 등) 2. 정서적 안정 및 자신감 회복(마음의 평안을 얻고 생활극복의 자신감이 생겼다) 3.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 4. 건강회복 5. 주거안정(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전세금 마련)

6) 시설입소 기간 중의 애로점과 가장 도움된 분야

퇴소자에 대한 전화상담에서 퇴소자들의 시설입소 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을 살펴보면 <표 4-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생활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대우 등으로 자녀들이 시설생활을 싫어해 엄마로서 괴로웠다.’ 또 생업활동으로 귀가가 늦게 되는 경우 시설규칙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문제, ‘3년이라는 한정된 입소기간으로 처음 입소하였을 때는 너무 좋았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퇴소에 대한 중압감으로 잠도 못 잘 정도였다’는 등의 어려웠던 점을 답해 주었다.

<표 4-43> 시설입소 기간 중의 애로점

구분	내 용
입소기간 중 어려웠던 점	1. 자녀들이 시설생활을 싫어했다 2. 늦은 생업활동으로 귀가시간 지키기가 어려웠다. 3. 시설생활자라는 편견(낙인)과 그에 따른 차별대우(자녀의 보육시설) 4. 생활터전의 변화에 따른 취업문제 5. 퇴소 후의 생활에 대한 중압감

퇴소자에 대해 모자보호시설 입소기간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순서대로 답하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4-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이 좋았다는 것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도움, 자녀양육 및 교육, 정서적 안정, 의료서비스, 기타 신앙생활을 통한 마음의 안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 입소 모자가정의 입소사유에서 주거안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던

것과 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44> 시설입소 생활 중 가장 도움이 된 분야

구 분	내 용
입소생활에서 가장 도움이 된 것 (순서대로)	1.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28) 2. 경제적 도움(23) 3. 자녀양육 및 교육(19) 4. 정서적 안정(16) 5. 의료서비스(3) 6. 기타(신앙생활)(1)

10. 모자보호시설 서비스에 대한 욕구

모자보호시설의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입소자, 퇴소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건의 사항을 보면 <표 4-4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첫째, ‘모자원’이라는 모자보호시설의 명칭에 대한 것이었다. ‘모자원’이라는 시설명칭은 지역 내에서 속칭 ‘과부집’이라는 등의 부정적 이미지와 사회적 편견을 갖게 함으로 입소자 자녀들이 놀림을 당하거나 무시 등의 인격적 손상을 입게 됨으로 시설느낌이 안 나는 명칭으로 개명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둘째, 개별상담의 강화이다. 입소자들이 생업에 바빠 상담 받고 싶거나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시설직원과 자주 만나기 어려움으로 입소기간 중 개별가구에 대한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각 가정별로 문제를 파악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점이 불편한지 욕구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주길 바라고 있다.

셋째, 어머니 자조모임의 활성화이다. 시설에서 예배 등의 종교적 모임이 아닌 어머니들간의 자조모임을 마련하여 같은 처지의 어머니들끼리 서로 친밀해지고 상호간에 도울 수 있도록 자조모임의 활성화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었다.

넷째, 퇴소자 관련 프로그램의 마련이다. 퇴소자들은 시설형편상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퇴소자 상담이나 퇴소자 가족모임, 퇴소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정보제공 등 퇴소자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건의사항 및 개선요구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4-45> 입소자, 퇴소자의 모자보호시설의 개선 및 건의사항

입 소 자	퇴 소 자
1. 모자원의 명칭변경 요청 (자녀들이 아주 싫어한다. 모자원이라는 명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해 무시당하거나 차별, 인격적 손상을 입기도 함.) 2. 입소대기기간의 단축 (입소 대기기간이 짧아야 경제적으로나 주거문제 등으로 어려울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개별 가구 상담 (개인별, 가구별로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진단, 자립계획을 세우고 실천지도 및 자원요망) 4. 시설 내부시설 구조변경 및 보수 필요 (모자원 외관은 비교적 좋은 편이나 난방 및 위생시설, 주방시설, 조명 등 내부시설이 노후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 5. 어머니 자조모임의 활성화 (어머니들간의 모임을 활성화 시켜 서로간의 위로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6. 입소기간의 탄력적 적용 (입소기간을 세대별 상황과 자립기반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7. 다양한 기능습득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실시 (취미생활이나 생계에 도움을 주는 기능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8. 방문자에 대한 배려 (가까운 부모, 형제 등의 단기간 방문 시 숙식 등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9. 다양한 모자복지시설의 확충 (모자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이 적은 보증금이라도 내고 생활할 수 있는 살비 모자복지주택과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10.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모자보호시설 내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하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나 장애인 등등의 시설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다.) 11. 정기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 실시 12. 방과 후 교실이나 야간 보육의 활성화 13. 입소자 인성변화교육 실시 (모에 대한 인성변화교육을 실시함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키고 자존감 및 자립의지를 높여야 한다.)	1. 모자원의 명칭변경 요청 (시설느낌이 안 나는 것으로 바뀌면 좋겠다.) 2. 입소자 간 관계 조정 및 차별 없는 대우 (입소자들간의 불화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 조정해주고 입소자들에 대해 차별대우가 없으면 좋겠다.) 3. 개별 가구 상담 (개별가구에 대한 상담을 통해 각 가구마다의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자립계획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시켜야 한다.) 4. 부모자녀 프로그램의 강화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여 생업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의 부족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5. 모자보호시설의 확충 (모자보호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지역에서 힘들게 사는 모자가정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6. 종교적 행사 축소 (종교성이 강한 행사는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같은 종교가 아닌 경우 상당히 부담된다) 7. 직원들의 자질향상 -(입소자들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입소자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자질이 갖추어져야 한다.) 8. 영구임대주택 연결 (퇴소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9. 취업관련 훈련이나 알선의 체계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전달되면 이용하기 좋을 것이다.) 10. 퇴소자 사후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퇴소 상담 시 마치 쫓겨 나는 느낌이고 퇴소 후에는 모든 정보와 관계가 단절됨으로 외톨이가 된 느낌이다. 그러므로 퇴소자 가족에게도 입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제공, 시설프로그램 참여, 퇴소가족 생활지도 및 상담 등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제5장 모자보호시설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논문에서는 모자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모자가정이 모자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그 결과 자립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원하는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설문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조사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절 문제점

1. 생업활동 지원의 부족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시설입소 모자가정의 84%가 고졸이하의 학력이며 연령은 94%가 30-40대이며 근로형태는 56%가 임시고용이나 일일고용의 형태로 월평균 수입은 50-80만원 정도이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은 안정된 직장과 소득을 보장받기에는 불리한 조건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자가정의 특성과 활용 가능한 개인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한 생업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입소자들은 시설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입소를 할 수 있음으로 생활기반이 바뀔 것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모자보호시설에서의 생업활동과 관련한 취업 알선이나 취업상담 등과 같은 서비스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못함으로 시설입소 후 실직과 부정기적인 일감으로 생활이 위축되게 된다.

여성가장들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많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나 모자가정의 모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참여했다고 해도 생계유지 등을 위해 중도포기 하거나 마친 후에도 직업훈련 받은 것을 활용하여 취업 및 창업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직종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결국 많은 어머니들이 직업훈련참여나 기능교육 참여를 하였어도 배운 바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 일용이나 임시직종에 종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2. 모자보호시설 및 주거지원 부족

본 연구의 조사결과 입소대기기간에 대해서 40%가 긴 편이라고 답변했으며 대기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 2년 이하를 기다린 사람도 20%정도가 있었다. 특히 IMF시기를 지나면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신청세대가 증가하여 입소대기기간은 더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겠다는 모자가정은 대부분 가정해체 직전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입소대기중인 모자가정들은 월세를 못내 약간의 보증금을 다 잃고 입소만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일시보호시설, 해체가족 보호시설 등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퇴소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모자가정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6개월 이상 1년까지 기다리게 됨으로 많은 입소 대기자들의 생활은 아주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점점 늘어나는 모자가정과 여성의 빈곤화 경향의 심화, 전·월세금의 폭등, 사회구조적인 여성노동에 대한 불평등 등은 저소득 모자가정이 '가족'의 체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함으로 생활기반이 부족한 모자가정의 경우 가족해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전국의 모자보호시설은 이들의 시설입소에의 욕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으로 일선 담당자들조차도 요보호 모자가정에 대해 모자보호시설 입소를 적극 권유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영구임대주택 제공이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으나 최근 서울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실적은 아주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점수 산정 시 저소득 모자가정은 65세 이상 노인부양가구나 장애인 가구에 주어지는 가구형태상의 가산점이 없음으로 인해 낮은 점수를 받게 됨으로 신청순위에도 못 들어가는 형편임으로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되기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도 신청대상이 저소득 주민으로 광범위하고 그 물량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으로 모자가정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자녀양육 및 교육의 미흡

시설이용 모자가정의 자녀는 2명 이하인 경우가 85%이상으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입소자가 약70%정도 되었다. 대부분의 취학 전 아동들은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나 보육시간이 대부분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근로형태가 대부분 파출부나 봉제공장 미싱사이거나 미싱보조, 식당 종업원 등과 같은 서비스직이나 생산직에서 일용 및 임시직에 종사하는 모자가정의 취약한 근로상황에서는 자녀들의 보육시간에 맞춰 출, 퇴근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어머니들은 생업활동을 위해 장기간 근로함으로 자녀들과의 대화시간이 부족하여 자녀들의 생활지도나 대화에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의 결식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모자보호시설에서의 자녀급식에 대한 희망여부 조사시 48%가 매우 그렇다, 16%가 그렇다로 무려 64%의 모가 자녀급식을 희망한 것은 생업과 자녀보육을 함께 해야함으로 모가 늦게 퇴근하는 경우 자녀들의 급식은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는 모의 현실을 반영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결과에서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큼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큼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각 시설에서 대부분 자녀보육 및 방과 후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고 특히 2001년도에는 아주 적으나 아동교육프로그램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입소 자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는 인력 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턱없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점은 시설의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한 서비스가 전문적이고 일관되게 제공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입소자녀에 대한 진정한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4. 보건·의료서비스의 부족

모자보호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로서 입소자는 의료급여 1종을 받게 된다. 이것은 본인부담 없이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입소 모자가정의 건강유지에 요긴한 급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료급여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별과 불친절

등은 국가가 많은 의료급여제정을 투입함에도 불과하고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만을 얻고 있기도 하다.

건강은 활발한 생업활동과 모든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모자보호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업에 바쁜 입소자들은 자신과 자녀들의 건강을 돌볼 시간적,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대부분 신체적인 과로와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뚜렷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어도 정신적·신체적으로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입소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서울시 일부시설에서는 정신과적인 검사나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기도 하고 보건소의 무료예방접종, 자궁암검사 등에 입소자들을 참여케 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지원과 참여가 미미한 형편이라고 하겠다.

5. 모자보호시설 전문인력의 부족

사회변화와 이혼, 미혼모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특성 및 문제점과 그에 따른 입소자의 욕구도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점점 복잡, 다양해짐으로 그들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자원을 동원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자보호시설 종사자의 전문인력보충과 기존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모자보호시설은 시설장, 총무, 상담원, 관리인이 각 1명 씩 종사하고 있으며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무원 또는 보조원 1명을 채용할 수 있게되어 있으나 사실상 입소자 관리와 입소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며 재교육을 위한 결원조차 허용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입소자들은 직원과의 관계가 좋고 편안하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시설직원들과의 상담을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모자보호시설 이용자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상담하기에는 연령상이나 경험상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었다. 이러한 점은 모자보호시설 이용자들이 종사자들을 전문가와의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로 인식함으로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

요하다.

6. 시설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및 소극적 운영

모자보호시설의 발전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모자보호시설의 시작이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들에 의한 전쟁미망인에 대한 보호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모자보호시설이 공통적으로 예배와 종교행사를 행하고 있어 입소자나 퇴소자에 대한 조사에서 그러한 종교적 행사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설립의 시작이 어떠한 시설운영에서 종교성을 배제해야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모자보호시설 입소 후 종교생활을 통해 많은 위안을 받았다고 하는 입, 퇴소자도 있었으나 시설 프로그램이 일부 종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부분의 모자보호시설 입, 퇴소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시설명칭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무자들과 이용자들에게 공모하여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시켜 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모자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는 시설의 목적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 인식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과감하게 개선해 보는 것도 적극적인 운영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한참 자라나는 아동기나 예민한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시설명칭만으로도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스스로 위축되는 악영향을 입게 됨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내의 시설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의 일부를 개방함으로 지역 내에서의 시설의 자리를 확실히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시설의 운영은 입소자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전통적인 것, 행정 편의적인 것도 과감히 개선하는 입소자 중심의 열린 태도가 필요하며 폐쇄적인 시설이 아니라 개방적인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도 모자보호시설의 운영은 입소자 중심이 아닌 운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소자와의 관계가 수직적, 권위주의적이며 상의하달식의 운영구조를 갖고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지 않나 생각된다.

7. 모자복지정책의 미흡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재정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 중에서도 모자복지에 투자되는 예산은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모자가정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 가정해체와 아동유기, 청소년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사회문제의 예방적인 면도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사회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이혼율과 미혼모의 발생 등으로 인한 모자가정의 증가와 그에 따른 여성의 빈곤화 또는 빈곤의 여성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모자가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은 사별이나 이혼, 미혼모 등으로 인한 모자가정의 발생 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 그들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면, 자녀양육 및 교육부문, 주택부문, 심리·정서적인 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모자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모자가정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는 있으나 일선에서의 행정력 부족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자가정이 제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모자복지서비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의 마련과 더불어 그 서비스의 내용도 충실히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일선 동 자치센터 등에서의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같은 전문 인력은 거의 국민기초수급자 관리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모자복지서비스 등을 위한 전담인력도 배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정부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닌 기타 여러 가지 정보제공 및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와 자녀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연계, 모자가정 특성과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는 거의 전무한 형편으로 단지 가정담당 업무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 중 하나로 있어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일선에서는 상당히 미미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제2절 개선방안

1. 생업활동 지원강화

본 연구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모자가정의 모(母)는 개인적인 특성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거리를 얻기가 힘든 점이 있다. 그러므로 입소자의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통해 개인이 능력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고, 활용 가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여 취업알선이나 창업지도를 철저히 하여 불안정한 생업을 확고히 하도록 생업활동지원이 시설에서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 모든 것을 시설에서 전부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이것들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자원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직업상담전문가와의 연계, 취업정보센타와의 직통연결이라던가, 지역사회 내 중소기업과의 구인구직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시설에서도 입소자의 생업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시켜야 한다.

2. 모자보호시설의 확충 및 주거지원 강화

모자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중 경제적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는 모자가정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자보호시설의 확충과 주거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전월세금의 변동이 큰 상황에서는 자녀들과의 생활도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을 더욱 위협하고 급기야는 주거공간을 잃고 가정해체의 위기에까지 도달하는 위기에 처한 모자가정이 필요할 때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자보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즉 현행과 같은 모자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모자복지주택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퇴소자의 건의 사항 중에도 있는 것으로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 후에도 자립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지원해 주는 모자자립시설이나 적은 임대보증금을 본인 부담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모자가정들이 몇 가구씩 입주해서 살 수 있는 모자복지주택(가명) 등을 많이 확충해 줄 것을 제시하기도 한 것을 보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모자복지시설의 다양한 확충은 이와 같이 모자가정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 한층 더 나은 시설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자보호시설은 단순한 사회복지수용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임으로 시설병을 걱정할 필요 없이 다양한 복지시설로 일반 사회에서 홀로 자립하기 힘든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하루 속히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모자가정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영구임대주택 신청자에 대한 점수 산정 시 가구형태에서 노부모부양가구나 장애인가구에 대해 가산점을 주듯이 모자가정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주어 입주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한다. 특히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전세나 월세 등 주거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임으로 저소득에 재산액도 거의 없는 모자가정의 경우 주거지 문제해결이 그들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야간 보육 및 교육지원 강화 및 확대

서울시 모자보호시설에서 이미 대부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 내 보육시설이나 학교 하교 후 시설로 귀가한 자녀들에 대해 야간 보육 및 숙제 지도 등의 야간학습과 다양한 정서함양프로그램, 생활지도 및 상담 등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자녀들의 생활상태를 어머니에게 알려줌으로 어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향상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이 생업활동으로 자녀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 지도해 주어야 한다.

또한 취업모의 어린 자녀들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취업모의 이른 출근, 늦은 퇴근으로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입소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는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강한 시설입소 모들의 안정된 생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으며 결국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지원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4. 보건·의료서비스의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는 단순히 의료급여1종을 제공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입소자 전원에 대한 정기적인 심신의 건강검진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소득 모자가정은 가장인 모나 세대원인 자녀들이나 모두 보건·의료에서 취약한 대상들이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사별, 이혼 등의 과정을 겪으며 심리적으로 심신의 어려움에 처했던 모자가정의 모나 자녀들은 치료받지 못한 상처들을 안고 생활함으로써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모자가정에 대해 심신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게 함으로써 그에 따른 치료나 프로그램의 참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서비스의 적극적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시설입소가 되면 의료급여 1종의 지원을 받게 되어 의료비부담은 아주 많이 감소하나 의료기관의 차별적 의료행위로 몸이 불편하여도 병·의원을 기피하고 의료급여 적용도 받지 않고 약국을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으로 정부는 의료기관의 의료 급여자에 대한 진료 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료급여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보건소에 의한 방문진료, 무료예방접종, 자궁암 및 유방암 검사, 건강검진 등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질병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기간 중에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5. 상담 및 전달체계 상의 전문인력 확충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작은 상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상담으로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담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중요한 것이다. 모자가정의 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도 이 상담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모자가정은 사회적 편견과 한부모라는 점에 대해 모나 자녀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상담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요즘은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혼, 가정폭력 등의 과정을 거치는 모자가정이 많아지면서 자존감이 더욱 낮아져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상담을 지속

적으로 제공함으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어떠한 사유로든 모자가정 발생 시부터 개입하여 철저한 사례관리를 하여 정책적,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동원하여 모자가정이 개인적, 환경적, 사회적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별이나 이혼, 출생신고 등과 관련한 주민등록정리 또는 호적정리 등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모자가정으로서의 어려움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모자보호시설에서도 시설입소 시 가정환경실태조사 등의 개별가구에 대한 상담이 있으나 입소 후에는 본인이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상담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자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동안에는 3개월이나 6개월에 한번정도는 정기적인 개별가구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각 가정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모자보호시설의 적은 인력으로는 전문적인 상담이나 개별가구에 대한 사례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상담서비스의 전문화와 철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자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상의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기존의 인력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재교육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행정적인 전달체계 상에서도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상담인력을 확충함으로 모자가정에 대한 재가서비스에서부터 상담과 사례관리를 하고 모자보호시설 입소 후에는 시설의 전문 상담가와 연계하여 입소한 개별가구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상담과 가구별 특성에 맞는 자활계획을 수립, 지도하고 퇴소 후에도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진정한 모자복지와 모자보호시설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6. 시설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적극적 운영

모자보호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자녀보육 및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과 종교적인 행사 즉, 예배라던가 성탄행사 등으로 프로그램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편향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프로그램의 실시에 앞서 입소자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을 시도해 보면 입소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관계, 특히 자녀교육과 관련한 부모교육프로그램, 다양한 인성변화교육프로그램, 의사소통 훈련,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교실 등의 운영을 통해 입소자의 모임을 유도하여 모와 자녀간, 입소자간, 시설종사자와 입소자간의 정서적 갈등 등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간관계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실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한 모자가정의 경우 지역에서 다시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국민기초수급을 받기도 하나 모자보호시설에서처럼 집중된 관리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복지 정보부족, 이웃들과의 단절 등으로 인한 고독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모자보호시설의 여건 상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퇴소자 관리에 대한 욕구가 아주 큰 것을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다.

물론 현재의 모자보호시설의 인력으로는 퇴소자까지 관리한 다는 것은 불가능할 지 모르나 일부 모자보호시설에서 현재 시도하고 있듯이 여름 가족캠프라던가 연말 성탄 행사 등 입소자들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에 퇴소자 가족을 초청하여 참여시킴으로 퇴소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하고 입소자들에게도 퇴소자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자 편의의 소극적 운영방침에서 입소자 중심의 적극적 운영방침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나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볼 수 있는 입, 퇴소자의 시설에 대한 개선요구사항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모자원’이라는 명칭에 대한 건의임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입소자들이 ‘모자원’이라는 명칭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특히 어린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많은 지원과 서비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명칭을 적극적으로 도입, 실시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명칭의 변경보다 사실은 모자보호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적 접근도 필요하다. 즉 모자보호시설의 개방 가능한 시설물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거나 지역사회내의 외부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매스컴 등을 활용한 홍보 등으로 모자보호시

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나 지역주민의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시설운영은 재정적으로나 인력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기관과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입소자 중심으로 운영시각을 바꾸면 현재보다 변화되는 시설운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7. 종합적인 모자복지정책 실시

모자복지법 시행 10여 년이 경과된 현재 모자가정에 대한 그 동안의 정책 시행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 대해 국가는 의무적으로 보호해야하고 국민은 권리로써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공공부조의 획기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모자정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모자복지법은 10여 년 간 대상자 특성의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욕구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책적 변화가 없는 상태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인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복지분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아동, 청소년, 미혼모, 매매춘, 가출여성, 노인여성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들과 연관되는 것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의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자가정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모자가정의 자립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큰 부담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모자보호시설의 확충,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통한 입소기회 확대, 가구특성에 따른 모자보호시설 입소기간의 탄력적 운영 등이 제도적·정책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철저한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과 노후 된 시설내부의 개보수와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모자가정의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모자보호시설이 모자가정의 자립에 어느 정도 기여하며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모자보호시설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서울시 모자보호시설의 입소대기자와 입소자, 퇴소자에 대해 설문 및 전화조사를 통해 연구하였다.

조사연구에 있어서 서울시 모자보호시설의 일부 대상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설문 회수율이 70%정도이어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선행 모자가정관련 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조사의 결과가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약화시켰으며 산업재해나 복잡한 도시환경에서의 빈번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의 증가, 여성들의 직업활동과 노동참여의 증가,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미혼모의 증가와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이혼증가 등으로 모자가정의 발생이 증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족제도가 소가족화, 핵가족화 됨에 따라 배우자와 사별, 유기, 별거, 기타 여러 사유로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사실상 여성이 가계의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하는 모자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나라는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혼율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많은 가정이 해체되어 모자가정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모자가정의 증가는 다양한 욕구와 문제들을 발생시키며, 특히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모자가정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여 빈곤을 심화시키고 더욱 낙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모자가정의 개인 및 가정·환경적 특성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고용상태나 수입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 나라와 같이 주거형태가 재산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및 경제적 불안정은 주거안정과 재산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을 더욱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자녀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이하의 연령층으로 양육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어머니들 대부분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저소득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모자가정의 모든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불안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생업에 대한 중압감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질병이 있거나 과로로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 만성적인 신체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저소득 모자가정은 특성상 경제적 문제, 주거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 의료의 문제, 심리·정서적인 문제 등을 지니게 되며 모자보호시설은 이러한 제반 문제들에 개입하여 그들의 생계안정과 자립기반조성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 자립을 이루고자 모자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인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저소득 모자가정의 문제점에서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경제적 문제와 주거환경의 문제, 또 어린 자녀들의 부양에 따른 자녀양육과 교육에 관한 문제에서 모자보호시설 이용자들의 기대와 만족도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자보호시설 입소를 통해 자녀양육 및 교육부문과 주거환경 부문에서 좀 더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 보건·의료분야, 심리·정서적 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의 보완, 기타 퇴소자 관리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와 시설운영에 대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 불안, 전월세금의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의 부담 가중,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모자가정의 증가 등은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으나 그에 비해 모자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함으로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모자가정이 위기에 처해 모자보호시설 입소를 신청해도 대기기간이 길어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입소하지 못함으로 모자가정을 더욱 빈곤과 가정해체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개선방안에서 제시하였듯이 지역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자가정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이나 모자복지주택(가칭) 등 다양한 모자보호시설을 지역적으로 골고루 확충하여 필요할 때 즉시 지원함으로써 자활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모자가정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과 재교육도 더 이상 미뤄 둘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현행의 모자보호시설 종사자로는 변화하는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의 욕구조차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중 사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사회복지사와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로 나누어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하고 사례관리자는 입소자 개별가구 및 개개인의 욕구 및 필요한 지원 등을 자세히 파악하여

지역자원과의 연계 및 동원을 통해 입소자의 자활지원을 집중적으로 하여 퇴소 시에는 최소한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은 자립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충실히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각 시설이 업무과다를 이유로 교육에 불참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종사자는 인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이들로 그들에 대한 재교육 및 재충전이 없이는 제대로 된 대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자녀보육 및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제는 지역 내에 많은 보육시설이 있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보육대상아동에 대한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으나 기타 보육시설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는 없음으로 보육시설 내에서도 차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자녀들을 시간적으로 돌볼 여유가 없는 모자가정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큼으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설 내에서 또는 지역 내 복지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하게 실시함으로써 입소 모자가정의 자녀보육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2001년도부터 모자보호시설 초등학교 이하아동에 대해 월5000원의 프로그램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너무나 미흡한 수준으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는 단순히 의료급여1종을 제공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입소자 전원에 대한 정기적인 심신의 건강검진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사별, 이혼 등의 과정을 겪으며 심리적으로 심신의 어려움에 처했던 모자가정의 모나 자녀들은 치료받지 못한 상처들을 안고 생활함으로써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모자가정에 대해 심신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게 함으로 그에 따른 치료나 프로그램의 참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서비스의 적극적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시설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적 운영을 행함과 더불어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과 모자가정 발생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해 개별적이고 종합적인 자활자립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늘어나는 모자가정의 자활, 자립과 빈곤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김영모외(1982), "현대사회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신섭중(2000),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이소희·정민자 외(1999),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이정호, 장인협(2000), "사회복지행정론", 서울대학출판부
장인협(1987),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정길홍(1999), "사회복지개론", 홍익제.
최일섭·최성재외(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황진수(1999), "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2) 정기간행물 및 학술지

- 김경애(1999),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지지망에 관한 연구", 동덕여성연구 제4호,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김성천(1994), "한국 가족복지의 미래", 사회복지 통권 제120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문성호(2001), "최근 미국의 복지개혁과 아동복지의 동향", '사회복지', 통권제149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민재성(2001), "21세기의 사회보장문제-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통권제149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박병석(1998), "한국의 가족복지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통권 제136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박영란(1998),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박영란·황정임(2001), "외국의 여성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통권 제60호, 한국여성개발원.
박정은(1993),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의 향상-부녀복지편", 사회복지 통권 제117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박태영(1992), "사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서비스", 사회복지 통권 제113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협의회.

박태영(1999), "사회복지시설·기관의 개혁과제", 사회복지 통권 제143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변화순(1996),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외(2000),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여성개발원.

송정부(2000), "공공복지서비스와 민간복지서비스의 연계방안", 사회복지 통권 제147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이영철(2000), "사회복지서비스 영역 확대 및 개선방향", 사회복지 통권 제147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정경배(2001), "21세기 사회보장개혁의 과제와 전망", '사회복지', 통권제149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정진영(1993), "한국의 부녀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과제", 사회복지 통권 제116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편부모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3) 논문

김선아(1998), "모자보호시설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평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자(1995), "모자보호시설을 퇴소한 모자가정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대책",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진(1999), "편부모가족의 현황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종희(1997), "모자가정에 대한 거택보호와 시설보호간의 생활실태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요한(1990), "모자보호시설의 실태 및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경아(1997),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재일(1999), "모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증진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성자(1985), "모자보호시설 수용 모자세대 생활실태 및 대책에 관한연구", 숭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정부 및 기타자료

경기도(1996), “경기여성발전 중·장기 계획”.

김승권(1999), “여성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4회 서울시여성복지세미나, 서울특별시 여성복지연합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8), “여성실직자 가정의 복지욕구와 '99실업대책 세미나”.

보건복지부(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0), ‘모자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jw.go.kr)

비행소년의 생활세계(2001),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서울특별시, 새서울여성정책3개년계획(2000-2002).

서울특별시(2000), “한국가족기능의 결손과 대책방안 모색”, 제5회 여성주간 기념세미나 자료집.

서울특별시(2001), “2001년 여성복지사업안내”.

유순도(2001), “모자보호시설 운영의 효율화 방안”, ‘여성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 세미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여성부(2001), “통계속의 여성의 생활과 지위”.

여성부(2001), “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00년도 시행실적 및 200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여성부(2001), “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00년도 시행실적 및 2001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주간 사회복지신문 제502호, 사회복지협의회

한국가족관계학회(1996), “늘어나는 편부모가정-그들의 현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 ‘96 가정복지세미나 자료집.

2. 국외문헌

Butler, A.C.(1996). "The Effect of welfare benefit levels on poverty among single-parent families". Social Problem, 3(1).

Duncan, S. & R. Edwards(1997). "Single Mother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Mothers or Workers? London : UCL Press.

Olson, K, & Pavetti(1996). "Personal and Family Challenges to the Successful Transition from Welfare to Work," The Urban Institute, Report.

ABSTRACT

A Study on the Reform Measures for the Maternal and child Welfare Facilities Operated by Seoul City Government

Shim, Yoo-Mi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ow much the maternal and child welfare facilities help widow mothers live a stable and independent life and address the problems of the facilities and thereby, suggest some reform measures for them. For this purpose, those mothers who are waiting to be accommodated into the facilities or accommodated already or who left them were surveyed through a questionnaire and phone interview.

Although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only several facilities were sampled and that the response ratio was too low (around 70%) to be generalized, it may be significant in comparison with preceding stud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most serious problems

of mother-child home were financial difficulty, poor living environment, child-rearing or education problem. Fortunately, those mothers accommodated into the facilities seemed to be more or less satisfied with them, because many of their problems could be solved. However, it was deemed necessary to improve the professional services in the areas of health, medical service, psychological or emotional problems, while operating more positive and diverse programs for the mothers leaving the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the problems involving the operation of maternal and child welfare facilities were identified as seven-fold: small subsidies for living activities, shortage of facilities and shelter, poor child rearing or education services, poor healthcare and medical services, shortage of professional manpower, less diverse facility programs and insufficient mother-child welfare program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seven-fold reform measures are suggested as follows: increase of the subsidies for living activities, expansion of maternal and child welfare facilities and shelters, reinstatement of educational programs at night, reinforcement of healthcare and medical services, recruitment of the professional manpower for counselling services, diversification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facility programs and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mother-child welfare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many widow mothers and their

children are waiting long to be accommodated into the facilities due to shortage of facilities, they are very vulnerable to poverty and disintegration of family. So,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facilities, while recruiting and reeducating the professionals, expanding the nursing and educational supports, reinforcing the healthcare and medical services, diversifying the facility programs in a more professional way, and financing the facility programs. In addition, the mother-child families need to be managed more thoroughly and thereby, individualized but comprehensive rehabilitation programs should be extended to them so that they can stand alone in the society, being free from poverty-stricken life.

(부록1)

설 문 지

ID				
----	--	--	--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자보호 시설이 여러분들의 자활·자립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 모자보호시설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모자복지정책 및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는 모든 자료는 이 연구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신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통계처리 되오니 사실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은 모자보호시설운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복지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고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01. 11.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 : 이 정 호

연구자 : 심 유 미

◎ 각 설문문의 해당번호에 V 또는 O로 표시하거나 귀하의 의견을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I. 귀하의 가구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 문	답 변
1. 귀하의 나이는?	만 세
2. 귀하의 학력은?	1) 국졸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이상
3. 귀하의 입소 전 근로형태는?	1) 상시고용 2) 임시고용 3) 일일고용 4) 자영업 5) 기타()
4. 귀하의 결혼상태는?	1) 미혼 2) 결혼 후 별개(년) 3) 사별(년) 4) 이혼(년) 5) 기타()
5. 귀하의 종교는?	1) 기독교 2) 천주교 3) 불교 4) 기타()
6. 자녀의 연령과 학력은?	연령 학 력
자녀 1	만 세 미취학, 초, 중, 고, 전문대, 대학이상 (재학중, 졸업)
자녀 2	만 세 미취학, 초, 중, 고, 전문대, 대학이상 (재학중, 졸업)
자녀 3	만 세 미취학, 초, 중, 고, 전문대, 대학이상 (재학중, 졸업)
자녀 4	만 세 미취학, 초, 중, 고, 전문대, 대학이상 (재학중, 졸업)
7. 입소 전 귀 가구의 주소득원은?	1) 본인소득 2) 정부보조금 3) 친인척보조 4) 기타 ()
8. 입소 전 귀 가구의 소득액은?	월평균 만원
9. 입소 전 귀 가구의 재산액은?	만원

II. 귀하의 시설입소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질 문	답 변																														
1. 모자보호시설에 대해 가장 처음 알게 된 경우는?	1) 구청,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요원 또는 가정복지담당 2) 사회복지기관이나 각종 상담소 3) 친구, 이웃 등 아는 사람 4) 신문, 방송 등 매스컴 5) 기타 ()																														
2. 시설입소를 위해 최초로 상담한 사람은?	1) 동사무소 담당 2) 구청 여성복지상담원 3) 샐터 등 복지시설 직원 4) 다른 종교 및 사회단체 직원 5) 기타 ()																														
3. 시설입소사유 중 가장 큰 사유는?	1) 경제적 자원 2) 자녀양육 및 교육해결 3) 의료문제 4) 심리·정서적 안정 5) 주거안정 6) 기타 ()																														
4. 시설입소 신청 후 입소까지의 대기기간은?	_____년 _____월																														
5. 모자보호시설에서 현재까지 거주한 총 기간은?	_____년 _____월																														
6. 시설입소 신청에서 입소까지의 과정에 귀하가 느낀 점에 대해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질 문</th><th>매우 그렇다</th><th>약간 그렇다</th><th>보통이다</th><th>약간 그렇지 않다</th><th>매우 그렇지 않다</th></tr> </thead> <tbody> <tr> <td>1) 신청 및 입소 시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이 충분하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2) 입소신청 및 입소절차가 복잡하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3) 입소 대기 기간이 길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4) 상담직원이 불친절하다</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질 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신청 및 입소 시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이 충분하다						2) 입소신청 및 입소절차가 복잡하다						3) 입소 대기 기간이 길다.						4) 상담직원이 불친절하다					
질 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신청 및 입소 시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이 충분하다																															
2) 입소신청 및 입소절차가 복잡하다																															
3) 입소 대기 기간이 길다.																															
4) 상담직원이 불친절하다																															

Ⅲ. 경제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질문	답변																																																						
1. 귀 가구의 현재 주소득원은?	1) 본인의 근로소득 2) 정부의 보조금 3) 부모, 형제 등의 지원 4) 시설의 후원금 5) 기타 ()																																																						
2. 귀하의 현재 근로형태는?	1) 상시고용 2) 임시직 3) 일용직(일당제) 4) 자영업 5) 기타 ()																																																						
3. 귀 가구의 현재 소득액은?	월평균 만원																																																						
4. 귀 가구의 현재 재산액은?	약 만원																																																						
5. 입소 후 소득의 변동이 있으셨습니까?	1) 없다 2) 있다 () () 만원 증가)																																																						
5-1. 감소된 사유는?	1) 실직 2)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일거리 감소 3) 질병 4) 정부보조금의 감소 5) 후원금 중단 6) 기타()																																																						
5-2. 증가된 사유는?	1) 생계비 등 정부보조금 지급 2) 취업 3) 후원금증가 4) 친지도움 5) 기타()																																																						
6. 입소 후 재산의 변동이 있으셨습니까?	1) 없다 2) 있다 () () 만원 증가)																																																						
6-1. 감소된 사유는?	1) 생활비 증대 2) 빚 갚음 3) 질병치료 4) 자녀교육비 증대 5) 기타()																																																						
6-2. 증가된 사유는?	1) 저축 2) 부모, 친지도움 3) 시설 및 복지기관의 후원금 4) 기타()																																																						
7. 귀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약 만원																																																						
8. 귀 가구의 월평균 저축액은?	약 원																																																						
9. 시설입소 후 귀하의 경제적 변화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질문</th><th>매우 그렇다</th><th>약간 그렇다</th><th>보통이다</th><th>약간 그렇지 않다</th><th>매우 그렇지 않다</th></tr> </thead> <tbody> <tr> <td>1) 시설입소로 짐걱정 없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2) 생계걱정을 않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 좋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3) 언제나 취업알선이나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4) 정부보조금 지원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5) 후원금이나 기타 생활용품 등의 지원이 늘었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6) 시설에 입소한 것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된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7) 시설입소 후 저축이 늘었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8) 입소 후 생활환경의 변화로 일거리가 줄었거나 현재 실직 중이다.</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질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시설입소로 짐걱정 없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다.						2) 생계걱정을 않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 좋다						3) 언제나 취업알선이나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다.						4) 정부보조금 지원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5) 후원금이나 기타 생활용품 등의 지원이 늘었다.						6) 시설에 입소한 것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된다						7) 시설입소 후 저축이 늘었다.						8) 입소 후 생활환경의 변화로 일거리가 줄었거나 현재 실직 중이다.					
질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시설입소로 짐걱정 없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다.																																																							
2) 생계걱정을 않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 좋다																																																							
3) 언제나 취업알선이나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다.																																																							
4) 정부보조금 지원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5) 후원금이나 기타 생활용품 등의 지원이 늘었다.																																																							
6) 시설에 입소한 것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된다																																																							
7) 시설입소 후 저축이 늘었다.																																																							
8) 입소 후 생활환경의 변화로 일거리가 줄었거나 현재 실직 중이다.																																																							

N. 주거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	답변																																																												
1. 시설입소 전 주거형태는?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 4) 보증금 없는 월세 5) 무료임대 6) 기타 ()																																																												
2. 입소 전 거주지의 사용방수는?	개																																																												
3. 시설에서의 거주기간 3년이 자립기간으로 적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1) 너무 길다 2) 적당하다 3) 부족하다 * 길거나 부족하다면 적당한 기간은? _____년 * 그 이유는?(구체적으로)																																																												
4. 시설입소 후 귀하의 주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질문</th><th>매우 그렇다</th><th>약간 그렇다</th><th>보통 이다</th><th>약간 그렇지 않다</th><th>매우 그렇지 않다</th></tr> </thead> <tbody> <tr> <td>1) 시설입소로 주거환경이 많이 좋아졌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2) 시설 주거공간이 부족하여 불편하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3) 입소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주거시설이 좋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4) 자녀들은 자기들 방이 없어 불만이 있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5) 시설내 다른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6) 시설내 부대시설이 부족하다. (상가, 어린이집, 식당 등)</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7) 시설에서 아동에 대한 급식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8) 시설입소 후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는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9) 시설입소 후 주거비용감소로 생활비가 많이 줄었다.</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질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시설입소로 주거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2) 시설 주거공간이 부족하여 불편하다						3) 입소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주거시설이 좋다						4) 자녀들은 자기들 방이 없어 불만이 있다.						5) 시설내 다른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6) 시설내 부대시설이 부족하다. (상가, 어린이집, 식당 등)						7) 시설에서 아동에 대한 급식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8) 시설입소 후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는다.						9) 시설입소 후 주거비용감소로 생활비가 많이 줄었다.					
질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시설입소로 주거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2) 시설 주거공간이 부족하여 불편하다																																																													
3) 입소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주거시설이 좋다																																																													
4) 자녀들은 자기들 방이 없어 불만이 있다.																																																													
5) 시설내 다른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6) 시설내 부대시설이 부족하다. (상가, 어린이집, 식당 등)																																																													
7) 시설에서 아동에 대한 급식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8) 시설입소 후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는다.																																																													
9) 시설입소 후 주거비용감소로 생활비가 많이 줄었다.																																																													

V.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	답변																																																												
1. 입소 전 미취학 자녀의 양육 형태는?	1)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2) 놀이방 3) 부모나 형제 등 친척 4) 다른 자녀 5) 집에 혼자 둠 6) 기타()																																																												
2. 입소 전 초등학교생의 방과 후 교육은?	1) 본인 혼자 2) 다른 형제, 자매 3) 학습지나 학원 4) 복지관 등의 방과후 교실 5) 기타()																																																												
3. 입소 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1) 식사 2) 질병치료 3) 학업지도 4) 대화단절 5) 자녀의 비행 6) 자녀행동 통제불능 7)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 8) 기타()																																																												
4. 입소 전 자녀와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로 누구와 상담하였는가?	1) 스스로 해결 2) 친구나 아는 사람 3) 부모나 형제, 자매 4) 등사무소 담당 5) 사회복지관 직원 6) 이웃사람 7) 기타()																																																												
5. 입소 전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은?	1) 시설 학원 이용비 지원 2) 시설내 학습지도 프로그램 3) 부모교육프로그램 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훈련 5) 직업훈련상담 6) 기타()																																																												
6. 시설입소 후 귀하의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변화된 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질문</th><th>매우 그렇다</th><th>약간 그렇다</th><th>보통이다</th><th>약간 그렇지 않다</th><th>매우 그렇지 않다</th></tr> </thead> <tbody> <tr> <td>1) 시설입소 후 자녀들의 생활이 많이 안정되었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2) 아동교육과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3) 시설내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아동지도와 탁아가 큰 도움 된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4)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와 교육 프로그램이 큰 도움 된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5)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자녀들이 싫어한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6)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설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7) 시설의 직원들과 자녀교육과 양육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한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8) 시설입소 후 자녀를 문제로 다른 입소자와 싸운 적이 있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9) 시설에서의 자녀양육 및 교육이 입소 전보다 훨씬 도움된다.</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질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시설입소 후 자녀들의 생활이 많이 안정되었다.						2) 아동교육과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3) 시설내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아동지도와 탁아가 큰 도움 된다						4)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와 교육 프로그램이 큰 도움 된다						5)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자녀들이 싫어한다.						6)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설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7) 시설의 직원들과 자녀교육과 양육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한다.						8) 시설입소 후 자녀를 문제로 다른 입소자와 싸운 적이 있다.						9) 시설에서의 자녀양육 및 교육이 입소 전보다 훨씬 도움된다.					
질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시설입소 후 자녀들의 생활이 많이 안정되었다.																																																													
2) 아동교육과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3) 시설내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아동지도와 탁아가 큰 도움 된다																																																													
4)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와 교육 프로그램이 큰 도움 된다																																																													
5)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자녀들이 싫어한다.																																																													
6)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설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7) 시설의 직원들과 자녀교육과 양육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한다.																																																													
8) 시설입소 후 자녀를 문제로 다른 입소자와 싸운 적이 있다.																																																													
9) 시설에서의 자녀양육 및 교육이 입소 전보다 훨씬 도움된다.																																																													

Ⅷ. 의료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	답변																																																												
1. 귀하의 의료보장 종류는?	1) 의료급여 1종 2) 직장 건강보험 3) 지역 건강보험																																																												
2. 질병 발생 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1) 약국 2) 동네 의원 3) 종합병원 4) 보건소 5) 한의원 6) 기타()																																																												
3. 귀하의 건강상태는?	1) 건강하다 2) 활동에는 지장 없지만 자주 아프다 3) 일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많이 아프다. 4) 너무 아파서 현재 일을 못하고 치료중이다.																																																												
4. 귀하에게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	1) 질병 없다. 2) 질병있다 (질병명 :) 3) 장애 없다 4) 장애있다 (장애명 :)																																																												
5. 귀하의 자녀에게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	1) 질병 없다 2) 질병있다 (질병명 :) ____명 중 ____명 3) 장애 없다 4) 장애있다 (장애명 :) ____명 중 ____명																																																												
6. 시설입소 후 받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질문</th><th>매우 그렇다</th><th>약간 그렇다</th><th>보통 이다</th><th>약간 그렇지 않다</th><th>매우 그렇지 않다</th></tr> </thead> <tbody> <tr> <td>1) 입소 전보다 자주 유방암이나 자궁암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2) 입소 전보다 각종 질병예방 및 보건에 대한 서비스가 많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3) 시설입소 후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4) 몸이 아프면 모자원의 다른 입소자들이 찾아와 도움을 주 기도 한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5) 내가 없을 때 아이가 다치거나 아프면 모자원 직원들이 우선 조치를 해 준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6) 시설의 구조가 장애인이 생활하는데는 불편함이 많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7) 의료급여 1종은 불편함이 많아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8) 시설에서 무료진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한다..</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9) 보건소에서 시설로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나왔으면 좋겠다.</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질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입소 전보다 자주 유방암이나 자궁암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2) 입소 전보다 각종 질병예방 및 보건에 대한 서비스가 많다.						3) 시설입소 후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4) 몸이 아프면 모자원의 다른 입소자들이 찾아와 도움을 주 기도 한다.						5) 내가 없을 때 아이가 다치거나 아프면 모자원 직원들이 우선 조치를 해 준다.						6) 시설의 구조가 장애인이 생활하는데는 불편함이 많다.						7) 의료급여 1종은 불편함이 많아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다.						8) 시설에서 무료진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9) 보건소에서 시설로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나왔으면 좋겠다.					
질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입소 전보다 자주 유방암이나 자궁암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2) 입소 전보다 각종 질병예방 및 보건에 대한 서비스가 많다.																																																													
3) 시설입소 후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4) 몸이 아프면 모자원의 다른 입소자들이 찾아와 도움을 주 기도 한다.																																																													
5) 내가 없을 때 아이가 다치거나 아프면 모자원 직원들이 우선 조치를 해 준다.																																																													
6) 시설의 구조가 장애인이 생활하는데는 불편함이 많다.																																																													
7) 의료급여 1종은 불편함이 많아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다.																																																													
8) 시설에서 무료진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9) 보건소에서 시설로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나왔으면 좋겠다.																																																													

Ⅴ. 기타 시설의 정서적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 문		답 변				
1. 귀하는 입소 전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누구와 상담하였는가?	1) 친척 2) 친구 3) 이웃사람 4) 사회복지기관 직원 5) 구청 여성상담원 6) 동사무소 사회담당 7) 기타()					
2. 귀하가 시설입소 전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장 받고자 하였던 상담은?	1)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2) 본인의 스트레스 3) 생활상담 4) 직업훈련, 취업알선 5) 재혼문제 6) 기타()					
3. 시설에서의 심리·정서적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 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정신적·심리적 고충해결을 위해 시설직원들과 자주 상담한다.					
	2) 생활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내 프로그램이 있다.					
	3) 시설에서 우울증 진단이나 심리 테스트를 받아 보았다.					
	4) 시설소개로 가족치료나 정신과적 진찰을 받은 적이 있다.					
	5) 시설입소로 불안감이 많이 없어졌다.					
	6) 시설 내 어머니들간의 친목, 지지 모임이 있다.					
	7) 시설 직원들과 관계가 좋고 편안하다.					
	8) 시설생활은 규칙이 엄격하여 나를 구속하고 부자유하다.					
	9) 시설입소로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변화되었다.					
4. 시설에서의 프로그램 중 귀하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1) 가족캠프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훈련 3) 어머니 집단상담 4) 부모교육 5) 외부 강사 초빙 특강 6) 기타()					
5. 앞으로 귀하와 자녀의 정서함양을 위해 시설에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1) 노래자랑 등 동아리 2) 각종 취미교실 운영 3) 야외화나 캠프 4)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 5) 체육대회 6) 기타					

Ⅳ. 다음은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문항입니다.

1. 모자보호시설의 주거 환경은?

- 1) 적절하다 2) 보통이다 3) 부족하다

*부족하다면 그 이유는? _____

2. 모자보호시설의 운영방침은?

- 1) 바람직하다 2) 보통이다 3) 바람직하지 못하다

*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_____

3. 모자보호시설의 직원은 전문적이고 성실한 서비스를 하는가?

-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_____

4) 모자보호시설에서 받는 전체적인 서비스는?

- 1) 아주 만족한다 2) 약간 만족한다 3) 보통이다

- 4) 약간 불만족이다 5) 아주 불만족이다

* 불만족하다면 그 내용은? _____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에서 여쭙보지 않은 사항 중 평소 모자원에서 생활하시면서 경험하신 바를 바탕으로 모자보호시설 서비스에 대해 건의하고 싶으신 점이나 개선되길 희망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2)

모자보호시설 입소 대기자 설문

【일반적 사항】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재산액	자녀수	입소 대기기간
세		만원	만원	명	년 월

1. 배우자 부재사유는?
2. 귀하의 건강상태는?
3. 귀하의 현재 주거상태는?
4. 자녀양육 및 교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5. 자립을 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① 자녀양육 및 교육 ② 경제적 안정 ③ 주거안정
 ④ 정서적 안정 ⑤ 질병치료 ⑥기타 ()
6. 모자보호시설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7.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유는?
8. 희망하는 모자보호시설 입소기간은?
9.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면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10. 모자보호시설에서 받고자 하는 주요 서비스 내용은?(3가지만)

(부록3)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설문

【 일반적 사항 】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재산액	자녀수	시설 입소기간
세		만원	만원	명	년 월

1. 시설에 처음 입소했을 때 기대정도는?

- ①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② 약간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③ 보통이었다 ④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⑤ 아주 도움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2. 모자보호시설의 주거환경은?

- ① 적절하였다 ② 보통이었다 ③ 부족하였다

* 부족하였다면 그 내용은? _____

3. 모자보호시설의 운영방침은?

- ① 바람직하였다 ② 보통이었다 ③ 바람직하지 못하였다

* 바람직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_____

4. 모자보호시설의 직원은 전문적이고 성실하게 도와주었는가?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_____

5. 모자보호시설에서 받은 서비스는?

- ① 아주 만족하였다 ② 약간 만족하였다 ③ 보통이었다
④ 약간 불만족하였다 ⑤ 아주 불만족하였다.

* 불만족하였다면 그 내용은? _____

6. 다음 중 시설 생활에서 도움이 된 것을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하시오?

- ① 주거() ② 정서적 안정() ③ 자녀양육 및 교육()
④ 경제적 도움() ⑤ 의료서비스() ⑥ 기타()

7. 모자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자립하는데 충분하였는가?

- ① 충분하였다 ② 부족하였다

* 부족하였다면 적당한 기간은? _____년

8. 퇴소시 입소 전과 가장 달라진 점은?

9. 입소기간 중 있었던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0. 시설에 건의사항은?